

---

# 복지교육국

---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

**복지과**



# (취약계층 복지증진) (P - 111)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관내
- 사업규모 : 무연고 사망자 처리 및 행려자 구호비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처리 지원 및 행려자에 대한 귀향여비·의료비 지원을 통한 공공복지 증진

○ 예산요구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예산액 (A)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F=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증감액 (D)	2회 추경 증감액 (E)		
계	27,000	29,000	20,000	0	9,000	2,000	
국 비		0				0	
도 비		0				0	
시 비	27,000	29,000	20,000		9,000	2,000	
기 타		0				0	

## □ 예산 증감사유

- 가족관계 해체 사유로 인한 무연고 사망자 발생 증가 추세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처리 비용 확보
- 코로나19 환자 중 무연고 사망자 발생 증가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등
근거내용	<p>■ 장사 등에 관한 법률</p> <p>·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시장 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p> <p>■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p> <p>· 제14조(응급조치의 의무)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또는 노숙인 등 관련 업무종사자는 중대한 질병, 동사 등 노숙인 등에 관한 응급상황을 신고받거나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결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공공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적 취약계층(무연고 사망자, 행려자) 지원 필요
- 예상치 못한 발생 빈도에 따른 처리 예산 확보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9,000	
취약계층 복지증진	201-01 사무관리비	· 무연고 사망자 공고료 : 1,000,000원*5건	= 5,000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무연고 사망자 처리비 : 2,000,000원*2구	= 4,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수시 : 행려자 및 노숙인 신고 및 접수 시 귀향여비, 응급의료비 지급
- 수시 : 무연고 사망자 행정처리 요청 접수 시 장례비 및 공고비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0년	<무연고 공고료> · 공 고 : 총 1건 · 지출액 : 총 990천원 <무연고 사망자> · 무연고사망자 처리 : 총 4건 · 지출액 : 총 8,000천원 <행려자> · 행려자 귀향여비 및 의료비 지급 : 총 13건 · 지출액 : 664천원	
2021년	<무연고 공고료> · 공 고 : 총 4건 · 지출액 : 총 3,960천원 <무연고 사망자> · 무연고사망자 처리 : 총 6건 · 지출액 : 총 6,400천원 <행려자> · 행려자 귀향여비 및 의료비 지급 : 총 14건 · 지출액 : 704천원	
2022년	<무연고 공고료> · 공 고 : 총 6건 · 지출액 : 총 5,940천원 <무연고 사망자> · 무연고사망자 처리 : 총 4건 · 지출액 : 총 8,500천원 <행려자> · 행려자 귀향여비 및 의료비 지급 : 총 11건 · 지출액 : 463천원	8.12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27,000	9,654		17,346	
2021년	27,000	11,064		15,936	
2022년	20,000	14,903		5,097	8.12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복지정책팀장 채혜영	담당자	사회복지7급 홍동균	전화	2618
-----	-----	------------	-----	------------	----	------

# (위원회 운영) (P - 111)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규모 : 심의위원 8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사회복지기금 운용에 따라 사업대상 선정 및 결산에 따른 심의수당
- 예산요구 현황

(단위:천원)

구 분	2021년 예산액 (A)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F=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증감액 (D)	2회 추경 증감액 (E)		
계	1,280	760	1,280	0	-520	-520	
국 비		0				0	
도 비		0				0	
시 비	1,280	760	1,280		-520	-520	
기 타		0				0	

## □ 예산 증감사유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상반기 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개최로 예산 감액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김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제2항
근거내용	제8조(간사및수당) ②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당해년도 사회복지기금 결산 및 익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개최된 심의위원회 구성원 참석수당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위원회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 사회복지기금 심의위원회 심의수당 경정 (760,000원) - 기정 (1,280,000원) (상반기 120,000원 지출 완료, 하반기 80,000원*8명*1회 = 640,000원)	=	-52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 3.12. : 2021년 1차 사회복지기금 심의위원회 서면심의  
(심의안건: ‘20년 사회복지기금 및 노인복지기금 결산안 / ‘21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2021.10.27. : 2021년 2차 사회복지기금 심의위원회 개최  
(심의안건: ‘22년 사회복지기금 및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 ‘21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2022. 3.21. : 2022년 1차 사회복지기금 심의위원회 서면심의  
(심의안건: ‘21년 사회복지기금 및 노인복지기금 결산안 / ‘22년 사회복지기금 및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2022.10.예정 : 2022년 2차 사회복지기금 심의위원회 개최  
(심의안건: ‘23년 사회복지기금 및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 ‘22년 사회복지기금 및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0년	- 2020.03.13. 사회복지기금 심의위원회 서면심의 - 2020.10.22. 사회복지기금 심의위원회 서면심의	코로나19로 인한 서면심의 진행
2021년	- 2021.03.12. 사회복지기금 심의위원회 서면심의 - 2021.10.27. 사회복지기금 심의위원회 서면심의	코로나19로 인한 서면심의 진행
2022년	- 2022.03.21. 사회복지기금 심의위원회 서면심의	8.12일 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1,280	0	-	1,280	
2021년	1,280	640	-	640	
2022년	1,280	120		1,160	8.12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복지정책팀장 채혜영	담당자	사회복지7급 임수민	전화	2192
-----	-----	------------	-----	------------	----	------

# (북부권 제2종합사회복지관 건립) (P - 111)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 ~ 2023. 1.                      ○ 위    치 :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502, 503
- 사업규모 : 연면적 7,402㎡(지하2층 ~ 지상4층)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북부권 5개 읍면 문화 복지 소외 지역 주민을 위해 종합사회복지관을 확충하여, 지역복지 욕구 충족 및 지역별 균형발전 도모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예산액 (A)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F=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증감액 (D)	<b>2회 추경 증감액 (E)</b>		
<b>계</b>	6,521,000	9,092,000	4,044,000	4,048,000	<b>1,000,000</b>	2,571,000	
국 비		0				0	
도 비		0				0	
시 비	6,521,000	9,092,000	4,044,000	4,048,000	<b>1,000,000</b>	2,571,000	
기 타		0				0	

## □ 예산 증감사유

- 건축, 기계, 전기, 소방, 통신, 조경 등 공정별 공사비 필요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1항,2항
근거내용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결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input type="checkbox"/>	자본 <input checked="" type="checkbox"/>	대상	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재원 <input type="checkbox"/>	2018.11월	2019.3월	-	2019.3월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북부권 주민들의 복지욕구 수요를 충족하고,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인프라 구축
- 주민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사업기간 내 완공을 목표로 단계별 예산확보 절실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000,000	
북부권 제2종합사회 복지관 건립	401-01 시설비	· 공사비 ※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노유자시설) - 건축 : 1,257,257원/㎡ × 7,402㎡ - 기계 : 225,062원/㎡ × 7,402㎡ - 전기 : 218,262원/㎡ × 7,402㎡ - 통신 : 163,751원/㎡ × 7,402㎡ - 소방 : 105,896원/㎡ × 7,402㎡ - 조경 및 토목 : 632,000원/㎡ × 7,402㎡ ※ 공사 계약 및 착공에 따른 차수별 공사금액	= 1,000,000	

## □ 투자사업 추진계획

###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F)	기투자 (A)	2022년 예산액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추경 증감 (D)	2회추경 증감 (E)		
<b>계</b>	<b>22,648,000</b>	<b>13,556,000</b>	<b>9,092,000</b>	<b>4,044,000</b>	<b>4,048,000</b>	<b>1,000,000</b>	<b>0</b>	
공 정 별	설계비	850,000	850,000	0				
	보상비	3,000,000	3,000,000	0				
	공사비	16,148,000	7,100,000	9,048,000	4,000,000	4,048,000	1,000,000	
	감리비	2,400,000	2,400,000	0				
	부대비	250,000	206,000	44,000	44,000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8. 9. ~ 2018. 11. : 기본계획 수립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19. 3. : 경기도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심의 완료
- 2019. 9. ~ 2019. 11. :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 완료 및 설계공모
- 2020. 2. ~ 2020. 3. :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설계용역 착수 및 보고회 개최
- 2020. 4. ~ 2020. 6. : 부지 경계측량 실시, BF예비인증 착수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 계약
- 2020. 8. ~ 2020. 11. : 설계 경제성검토용역(VE) 실시 및 시공사 입찰공고
- 2021. 1. ~ 2021. 4. : 설계용역 준공 및 공사 착공
- 2023. 1. : 공사 준공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0년	• 2020. 4 건설사업관리 입찰공고 • 2020. 6 건설사업관리 용역 계약 체결 • 2020. 10 실시설계 경제성검토용역(VE) 실시 • 2020. 11 시공사 입찰공고	
2021년	• 2021. 1 설계용역 준공 및 건축허가 완료 • 2021. 4 공사착공 ※ 동절기 공사 중지 2021. 12. 21. ~ 2022. 02. 28.	
2022년	• 2022. 8. - 공정을 : 59.2% 진행 - 건축.전기.소방.통신.조경 공사 : 외부 골조공사 완료, 내·외부 마감공사 진행중	8.12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5,437,625	2,576,364	2,861,261		
2021년	9,382,261	5,631,887	3,750,374		
2022년	11,842,374	4,223,382		7,618,992	8.12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복지과	사업규모	연면적 7,402㎡ (지하2층 ~ 지상4층)	2회추경 예산요구액 (천원)	1,000,000
부기명 (세부사업)	북부권 제2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공사	사업위치	통진읍 마송리 502,503번지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복지정책팀장 채혜영	담당자	행정7급 최규현	전화	2616
-----	-----	------------	-----	----------	----	------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수지 근무수당 지원) (P - 111)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규모 : 43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관내 특수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수당 지급을 통한 근로의욕 고취
- 예산요구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예산액 (A)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F=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증감액 (D)	2회 추경 증감액 (E)		
계	49,200	52,200	55,200	0	-3,000	3,000	
국 비		0				0	
도 비	24,600	26,100	27,600		-1,500	1,500	
시 비	24,600	26,100	27,600		-1,500	1,500	
기 타		0				0	

## □ 예산 증감사유

- 특수지 근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실인원 반영 감액 편성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제1항 제2호
근거내용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도서벽지 등 특수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근로의욕 고취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00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수지 근무수당 지원	307-01 사회복지장적수혜금	· 경정 (100,000원*43.5명*12회)-기정 (100,000원*46명*12회) =	-3,000	도비 50% 시비 5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10 : 국도비보조금 내시
- 2022.01 : 특수지역 내 사회복지종사자 특수지 근무수당 대상 파악
- 2022.01~12 : 특수지역 내 사회복지 종사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 2022.12.1.~12.31 : 실적보고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0년	· 특수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총 38명 451회 지원	
2021년	· 특수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총 39명 389회 지원	
2022년	· 특수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총 41명 281회 지원	8.12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45,600	45,100	-	500	
2021년	49,200	46,700	-	2,500	
2022년	55,200	28,000		27,200	8.12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복지정책팀장 채혜영	담당자	사회복지7급 차은이	전화	2619
-----	-----	------------	-----	------------	----	------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비 지원) (P - 112)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규모 : 1,310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예산액 (A)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F=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증감액 (D)	2회 추경 증감액 (E)		
계	15,960	13,100	17,480	0	-4,380	-2,860	
국 비		0				0	
도 비	8,030	6,605	8,795		-2,190	-1,425	
시 비	7,930	6,495	8,685		-2,190	-1,435	
기 타		0				0	

## □ 예산 증감사유

- 상해보험 대상자 실인원으로 반영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제1항 제2호
근거내용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비 지원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비 지원	307-01 사회보장적수혜금	· 경정(10,000원*1,310명*1회) - 기정(10,000원*1,748명*1회) =	-4,380	도비 50% 시비 5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10 : 국도비보조금 내시
- 2022.03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체상해보험가입 대상자 파악
- 2022.04 : 상해보험 가입비 지급
- 2022.12.1.~12.31 : 실적보고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0년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비 총 408명 지원	
2021년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비 총 1,239명 지원	
2022년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비 총 1,310명 지원	8.12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4,270	4,080	-	190	
2021년	15,960	12,390	-	3,570	
2022년	17,480	13,100		4,380	8.12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복지정책팀장 채혜영	담당자	사회복지7급 차은이	전화	2619
-----	-----	------------	-----	------------	----	------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P - 112)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치 : 김포시 사우중로 100
- 사업규모 : 1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차량 운영비 및 컴퓨터 구입비 지원을 통하여 원활한 민관협력 사업 도모

##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예산액 (A)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F=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증감액 (D)	2회 추경 증감액 (E)		
계	75,191	108,719	78,417	27,302	3,000	33,528	
국 비		0				0	
도 비		0				0	
시 비	75,191	108,719	78,417	27,302	3,000	33,528	
기 타		0				0	

## □ 예산 증감사유

- 김포복지재단 공모사업을 통한 김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차량 확보에 따른 차량 운영비 지원
- 차량 운영비(보험료, 유류비, 하이패스 등) 지원 필요
-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사무기기(컴퓨터) 구입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김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근거내용	<p>■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p> <p>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p> <p>■ 김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수당 등) 각 협의체 등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p>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차량 운영 지원을 통한 김포시 민관협력 사업 효율적 운영
- 지역사회보장서비스 제공 및 연계 협력에 관한 업무 지원을 통한 지역 중심 복지서비스 강화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000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	307-03 민간단체법정 운영비보조	· 취득세 : 100,000원 = · 주유비 : 120,000원×4월 = · 보험료 : 850,000원×1대 = · 차량유지비 : 180,000원×1대 = · 자동차세 : 140,000원×1대 =	100 480 850 180 140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 컴퓨터구입비 : 1,250,000원 =	1,250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9. : 김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차량 기탁식(김포복지재단) 및 컴퓨터 구입
- 2022.09. : 차량보험 가입 및 운영
- 2022.12. : 결과보고 및 정산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0년	○ 보조사업자 : 김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추진실적 - 제47기 김포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종료에 따른 2019년도 시행계획 결과평가 - 김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인건비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기회의 개최	
2021년	○ 보조사업자 : 김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추진실적 - 제47기 김포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종료에 따른 2020년도 시행계획 결과평가 - 김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인건비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기회의 개최	
2022년	○ 보조사업자 : 김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추진실적 - 제47기 김포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종료에 따른 2021년도 시행계획 결과평가	8.12일기준

###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73,845	62,664	0	11,181	
2021년	75,191	74,789	0	402	
2022년	105,719	105,719		0	8.12일 기준 실 집행현황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복지정책팀장 채혜영	담당자	사회복지7급 차은이	전화	2619
-----	-----	------------	-----	------------	----	------



#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P - 112)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3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보훈처로부터 수당지급을 받지 못하는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중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의 생계 안정 도모

## ○ 예산요구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예산액 (A)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F=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증감액 (D)	2회 추경 증감액 (E)		
계	1,800	3,600	7,200	0	-3,600	1,800	
국 비		0				0	
도 비	1,800	3,600	7,200		-3,600	1,800	
시 비		0				0	
기 타		0				0	

## □ 예산 증감사유

- 김포시 거주 유공자 사업대상 실인원 반영 (6명 → 3명)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당 월 100천원 지급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
근거내용	제3조(지원대상) 생활지원금 지원대상은 국가보훈처에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하되,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지급액 및 지급기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3조에 해당되는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희생한 5·18민주유공자를 예우하고 유공자 및 유족의 경제적 지원을 통한 복지증진 도모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100,000원 × 3명 × 12월	= -3,600	도비 100%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 1월 :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신청 접수 및 대상자 소득·재산 조회
- 2022. 6월 :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대상자 소득·재산 조사 확인조사 실시
- 2022. 12월 :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대상자 소득·재산 조사 확인조사 실시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0년	해당없음	
2021년	○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 : 2명, 1,100천원	2021.8월 시행
2022년	○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 : 3명, 1,600천원	8.12일기준

###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	-	-	-	
2021년	1,800	700	-	1,100	
2022년	7,200	1,600		5,600	8.12일 기준 실 집행현황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복지정책팀장 채혜영	담당자	행정7급 이정희	전화	2617
-----	-----	------------	-----	----------	----	------

# (보훈단체 지원) (P - 112)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치 : 김포시 장릉로 125
- 사업규모 : 1개 단체(무공수훈자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의 애국심과 공훈을 선양하고, 고인 및 후손의 자부심과 긍지를 고취시키고자 함.

##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예산액 (A)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F=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증감액 (D)	2회 추경 증감액 (E)		
계	52,766	63,290	58,290	0	5,000	10,524	
국 비		0				0	
도 비		0				0	
시 비	52,766	63,290	58,290		5,000	10,524	
기 타		0				0	

## □ 예산 증감사유

- 국가유공자 선양(장례)행사 진행 중 필요한 사업비 편성
- 선양행사 의복비 구입 및 행사 소요 비용 편성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근거내용	<p>■「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보훈단체 예산지원) 시장은 관계 법령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각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단체 운영 및 보훈회관 등 시설의 건립·운영</li> <li>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li> <li>3. 자원봉사 사업 및 국가보훈대상자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비</li> <li>4. “호국·보훈의 달” 각종 행사 시 필요한 예산 등</li> <li>5. 그 밖에 시장이 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li> </ol>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고령의 참전유공자의 선양의식 지원을 통한 고인의 사후 예우 지원
- 국가유공자 유족 등 후손에게 애국심 및 충절심 승계를 통한 나라사랑 정신 함양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5,000	
보훈단체 지원	307-07 사회복지사업보조	○ 단체명 : 무공수훈자회 - 의복비 : 200,000원×15개=3,000,000원 - 넥타이 구입비 : 10,000원×15명=150,000원 - 현수막 제작비 : 30,000원×15개=450,000원 - 근조화환 제작비 : 50,000원×15개=750,000원 - 유류비 : 650,000원	= 5,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 4. : 무공수훈자 김포시지회 보조금 지급
- 2022. 5. ~ 12. : 국가유공자 선양사업 실시
- 2022.12. : 사업 운영 결과 보고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0년	○ 보조사업자 : 상이군경희 등 보훈단체 12개 단체 ○ 추진실적 : 전적지순례 및 국립묘지참배, 고령위안회 행사, 환경정화활동, 항일역사 유적지 견학 등	
2021년	○ 보조사업자 : 상이군경희 등 보훈단체 12개 단체 ○ 추진실적 : 전적지순례 및 국립묘지참배, 고령위안회 행사, 환경정화활동, 항일역사 유적지 견학 등	
2022년	○ 보조사업자 : 상이군경희 등 보훈단체 12개 단체 ○ 추진실적 : 전적지순례 및 국립묘지참배, 고령위안회 행사, 환경정화활동, 항일역사 유적지 견학 등	8.12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54,410	26,190	0	28,220	
2021년	52,766	34,131	0	18,635	
2022년	58,290	15,500		42,790	8.12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복지정책팀장 채혜영	담당자	사회복지7급 홍동균	전화	2618
-----	-----	------------	-----	------------	----	------

# (보훈회관 건립) (P - 112)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8월 ~ 2024. 6월
- 사업규모 : 1개소(부지면적 735㎡, 연면적 2,130㎡)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현 보훈회관 노후화 및 산재되어 있는 보훈단체 통합관리로 맞춤형 보훈서비스 제공
- 예산요구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예산액 (A)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F=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증감액 (D)	2회 추경 증감액 (E)		
계	282,900	523,100			523,100	240,200	
국 비		0				0	
도 비		0				0	
시 비	282,900	523,100			523,100	240,20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김포보훈회관 건립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시공사 입찰 및 계약 의뢰 예산 증액 반영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국가보훈기본법	제23조 제1항 2호
근거내용	제23조(공헌선양사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완료	비대상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20.11월	2021.2월(도)	-	2021. 1월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보훈단체 통합관리 및 운영을 통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맞춤형 보훈서비스 제공
- 국가유공자 예우를 강화하여 올바른 국가관을 승계할 수 있는 공간 제공
- 보훈단체 간 협업 공간 제공으로 시너지 상승 및 보훈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523,100	
김포보훈회관 건립	201-01 사무관리비	· 건설기술용역평가 심사비(착공) =	1,000	
	401-01 시설비	· 공사비 ※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노유자시설) ○ 건축연면적 1,836.63㎡ × 3,920,220원 = 72.6억원 - 건축(기계설비) : 72.6억원 × 71.19% - 전기 : 72.6억원 × 9.79% - 통신 : 72.6억원 × 4.68% - 소방 : 72.6억원 × 3.85% - 조경 및 토목 : 72.6억원 × 10.49% ※ 공사 계약 및 착공에 따른 차수별 공사금액 =	300,000	
	401-02 감리비	·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설계 착수 후 6개월 ~ 준공까지) =	200,000	
	401-03 시설부대비	· 예비인증, 본인증 및 조달청 수수료 등 =	22,100	

## □ 투자사업 추진계획

###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F)	기투자 (A)	2022년 예산액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추경 증감 (D)	2회추경 증감 (E)		
계	8,307,000	282,900	523,100	0	0	523,100	7,501,000	
공 정 별	설계비	275,000	275,000	0				
	보상비	0		0				시유지
	공사비	7,260,000		300,000		300,000	6,960,000	
	감리비	726,000		200,000		200,000	526,000	
	부대비	46,000	7,900	23,100		23,100	15,000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0. 8. ~ 9. : 추진계획 수립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21. 1. ~ 3.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
- 2021. 4. ~ 5. :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 이행
- 2021. 6. ~ 8. : 건축기획심의 안건 상정 및 승인(원안가결)
- 2021. 9. ~ 2022. 2. : 조달청 설계공모 및 설계용역 착수
- 2022. 3. ~ 2022. 9. : 실시설계 용역
- 2022. 10. ~ 2022. 12. : 감리단, 시공사 입찰 및 계약
- 2023. 1. ~ 2024. 6. : 공사 착공 및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 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0년	- 2020. 8. ~ 9. 기본계획 수립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2021년	- 2021. 1. ~ 3.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및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 - 2021. 4. ~ 5.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 이행 - 2021. 6. ~ 8. 건축기획심의 안건 상정 및 승인(원안가결) - 2021. 9. 조달청 설계공모 신청	
2022년	- 2022. 3. 김포보훈회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22. 3. ~ 9. 실시설계 용역 완료	8.12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	-	-	-	
2021년	282,900	-	282,900	-	
2022년	282,900	204,113		78,787	8.12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복지과	사업규모	연면적 2,130㎡(지하1층 ~ 지상4층)	2회추경 예산요구액 (천원)	523,100
부기명 (세부사업)	김포보훈회관 건립 공사	사업위치	풍무2지구 38블록 16롯트(시유지)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복지정책팀장 채혜영	담당자	행정7급 최규현	전화	2616
-----	-----	------------	-----	----------	----	------

#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 (P - 113)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관내
- 사업규모 :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 및 e-그린 우편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각종 위원회 운영 및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요금 지원
- 예산요구 현황

(단위:천원)

구 분	2021년 예산액 (A)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F=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증감액 (D)	2회 추경 증감액 (E)		
계	33,390	30,560	41,370	0	-10,810	-2,830	
국 비							
도 비							
시 비	33,390	30,560	41,370	0	-10,810	-2,830	
기 타		0				0	

## □ 예산 증감사유

- 생활보장위원회의 서면심의 및 대면심의의 위원회 수당 감액(참여 인원 조정 8명→7명)
- 복지서비스 안내, 사회보장급여 결정(보장, 변동, 중지) 통지를 위한 행복e음 e그린 우편료 감액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사업법	제20조 제1항 제6조의2
근거내용	① 이 법에 따른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제6조의2(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 관한 자료 등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에 따른 참석수당
-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위한 통합조사관리용 이동통신비
- 복지서비스 안내, 사회보장급여 결정(보장, 변동, 중지) 통지를 위한 행복e음 e그린 우편료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천 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0,810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		
		- 서면심의수당 30,000원×1명×11회	=	-330
		- 대면심의수당 80,000원×1명×1회	=	-80
	· 제본 및 서식 제작	=	-800	
			-9,600	
	201-02 공공운영비	· 통합조사관리 이동통신비	=	-600
		- (경정)360,000원 - (기정)960,000원		
		· 행복e음 e그린 우편료	=	-9,000
		- (경정)27,000,000원-(기정)36,000,000원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매월 : 생활보장위원회 개최 (대면 1회, 서면 11회)
- 매월 : 통합조사용 이동통신요금 및 행복e음 e그린 우편료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0년	○ 생활보장위원회 수당 및 인쇄물 구입 등 : 955천원 ○ 행복e음 e그린우편료 및 통합조사용 이동통신요금 : 22,150천원	
2021년	○ 생활보장위원회 수당 및 인쇄물 구입 등 : 856천원 ○ 행복e음 e그린우편료 및 통합조사용 이동통신요금 등 : 24,519천원	
2022년	○ 생활보장위원회 수당 및 인쇄물 구입 등 : 990천원 ○ 행복e음 e그린우편료 및 통합조사용 이동통신요금 등 : 17,302천원	8.12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천 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27,880	23,105	-	8,872	
2021년	33,390	24,518	-	8,872	
2022년	41,370	18,292	-	23,078	8.12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복지정책팀장 채혜영 생활보장팀장 고명남 통합조사관리1팀장 배선숙	담당자	행정7급 이정희 사회복지7급 양현주 사회복지7급 조성진	전화	2617 2623 2640



# (생계급여) (P - 113)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관내
- 사업규모 : 6,908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현금지원을 통해 기본생활 보장 및 생활안정 도모
- 예산요구 현황

(단위:천원)

구 분	2021년 예산액 (A)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F=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증감액 (D)	2회 추경 증감액 (E)		
계	25,354,000	29,374,660	27,911,000	99,000	1,364,660	4,020,660	
국 비	22,819,030	26,437,493	25,120,000	89,000	1,228,493	3,618,463	90%
도 비	1,774,484	2,056,316	1,953,900	7,000	95,416	281,832	7%
시 비	760,486	880,851	837,100	3,000	40,751	120,365	3%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저소득층 신규책정자 및 전입 가구에 따른 생계급여 대상자 증가
- 생계급여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조기 폐지(2021. 10월)에 따른 대상자 증가(6,599명 → 6,908명)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 제1항
근거내용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 ①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되는 것으로 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본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input type="checkbox"/>	보조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현금지원을 통해 기본생활 보장
- 맞춤형복지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2022년 급여별 선정기준) (단위:원/월)

구 분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생계급여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생계급여 : 1,472,000원 × 309가구 × 3개월	≙ 1,364,66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매월 : 생계급여 대상자 신규 책정 및 변동(소득, 재산, 인적 변동사항 등) 확인
- 매월 : 생계급여 지급 (매월 20일 정기급여, 매월 말일 추가 급여)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0년	○ 생계급여 지급 : 매월 4,085가구 총21,437,350천원 지급	
2021년	○ 생계급여 지급 : 매월 4,911가구 총 25,113,897천원 지급	
2022년	○ 생계급여 지급 : 매월 5,349가구 총 17,497,726천원 지급	8.12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21,653,800	21,437,350	-	216,450	
2021년	25,354,000	25,113,897	-	240,103	
2022년	28,010,000	17,497,726	-	10,512,274	8.12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고명남	담당자	사회복지7급 권경민	전화	2621
-----	-----	------------	-----	------------	----	------

# (해산장제급여) (P - 113)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관내
- 사업규모 : 370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기초생활수급자의 출산 및 사망에 대한 필요경비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도모
- 예산요구 현황

(단위:천원)

구 분	2021년 예산액 (A)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F=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증감액 (D)	2회 추경 증감액 (E)		
계	198,000	302,700	185,800	-10,600	127,500	104,700	
국 비	178,200	272,400	167,200	-9,600	114,800	94,200	90%
도 비	5,900	9,100	5,600	-300	3,800	3,200	3%
시 비	13,900	21,200	13,000	-700	8,900	7,300	7%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사업량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214명 → 370명)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3조 및 제14조
근거내용	제13조(해산급여) ① 해산급여는 제7조제1항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에게 다음 각호의 급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제14조(장제급여) ① 장제급여는 제7조제1항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를 하는것으로 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신규사업□	계속사업■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경상■	자본□	-	-	-	-	-	-	-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출산과 사망 시 필요한 경비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도모  
(출산 시 1인당 700천원 / 사망 시 1인당 800천원 정액 지급)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해산장제급여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해산·장제급여 : 817,307원 × 156명	≒ 127,5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매월(수시) : 해산장제급여 신청 및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0년	○ 해산급여 : 6명 / 4,200천원 ○ 장제급여 : 208명 / 165,850천원	
2021년	○ 해산급여 : 11명 / 7,700천원 ○ 장제급여 : 228명 / 182,400천원	
2022년	○ 해산급여 : 6명 / 4,200천원 ○ 장제급여 : 201명 / 160,800천원	8.12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천 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171,760	170,050	-	1,710	
2021년	198,000	190,100	-	7,900	
2022년	175,200	174,350	-	850	8.12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고명남	담당자	행정9급 최윤	전화	2624
-----	-----	------------	-----	---------	----	------

# (긴급복지 지원) (P - 114)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치 : 관내
- 사업규모 : 3,825가구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실직, 중한 질병, 폭력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
- 예산요구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예산액 (A)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F=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증감액 (D)	2회 추경 증감액 (E)		
계	4,500,000	3,400,000	2,509,322	0	890,678	-1,100,000	
국 비	3,600,000	2,720,000	2,007,457		712,543	-880,000	
도 비	135,000	102,000	75,280		26,720	-33,000	
시 비	765,000	578,000	426,585		151,415	-187,000	
기 타		0				0	

## □ 예산 증감사유

- 긴급복지 대상자 증가에 따른 지원 대상가구 증가(2,823가구 → 3,825가구)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 제1항
근거내용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 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긴급지원의 지원대상 및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지원 종류·내용·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긴급지원사업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법·제도 기준 초과 등으로 적절한 보호가 어려운 위기가구에 대한 생계·의료·주거비 지원
- 선 지원, 후 심사를 통한 신속 지원으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및 사회안전망 기능 확대
- 사업량 증가에 따른 사업비 확대 (2,823가구 → 3,825가구)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긴급복지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긴급복지 지원 - 889,000원 × 1,002가구	≒ 890,678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수시 : 위기가구 발굴 및 현장조사
- 수시 : 긴급지원 대상자 신청 접수 및 사후조사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0년	- 복지사각지대의 위기가구 생계비 등 지원(총 5,210가구, 3,861,404천원)	
2021년	- 복지사각지대의 위기가구 생계비 등 지원(총 5,011가구, 3,543,607천원)	
2022년	- 지사각지대의 위기가구 생계비 등 지원(총 1,961가구, 1,590,570천원)	8.12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4,454,950	3,861,404		593,546	
2021년	4,500,000	3,543,607		956,393	
2022년	2,509,322	1,590,570		918,752	8.12.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희망복지팀장 홍지혜	담당자	사회복지8급 이숙희	전화	2633
-----	-----	------------	-----	------------	----	------

# (경기도형 긴급복지) (P - 114)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938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실직, 폭력, 질병 등 위기가구에 신속한 지원을 위한 경기도형 긴급복지
- 예산요구 현황

(단위:천원)

구 분	2021년 예산액 (A)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F=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증감액 (D)		
계	1,264,449	750,000	1,300,000	0	-550,000	-514,449
국 비		0				0
도 비	252,890	150,000	260,000		-110,000	-102,890
시 비	1,011,559	600,000	1,040,000		-440,000	-411,559
기 타		0				0

## □ 예산 증감사유

- 코로나19로 위기가구 대상자 감소에 따른 도비 변경 내시
- 사업규모 1,625가구에서 938가구로 감소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긴급복지지원법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2조	제4조 제1항
근거내용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긴급지원의 지원대상 및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지원 종류·내용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긴급지원사업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본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input type="checkbox"/>	보조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법·제도 기준 초과 등으로 적절한 보호가 어려운 위기가구에 대한 생계·의료·주거비 지원
-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대상자 발굴 및 지원으로 위기 해소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경기도형 긴급복지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800,000원 × 938명	≒ 750,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 1~ 12월 : 수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 동절기(10월~) : 연료비 추가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0년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생계비 등 지원 (총 1,069건, 603,904천원)	
2021년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생계비 등 지원 (총 1,570건, 1,026,488천원)	
2022년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생계비 등 지원 (총 342건, 275,858천원)	8.12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808,780	603,904		204,876	
2021년	1,264,449	1,026,488		237,961	
2022년	1,300,000	275,858		1,024,142	8.12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희망복지팀장 홍지혜	담당자	사회복지8급 염수현	전화	2634
-----	-----	------------	-----	------------	----	------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성립전)) (P - 114)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규모 : 50,090가구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입원·격리 대상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지원함으로써 생활 부담 감소

##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예산액 (A)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F=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증감액 (D)	2회 추경 증감액 (E)		
계	8,500,000	42,025,663	3,177,663	0	38,848,000	33,525,663	
국 비	4,250,000	21,012,831	1,588,831		19,424,000	16,762,831	
도 비	2,830,500	13,994,542	1,058,162		12,936,380	11,164,042	
시 비	1,419,500	7,018,290	530,670		6,487,620	5,598,790	
기 타		0				0	

## □ 예산 증감사유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급대상자 증가로 증액 (3,787가구 → 50,090가구)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4 제28조의5
근거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생활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li> <li>-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0조의4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li> </ul>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격리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급
- 사업내용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 수에 따라 지원
- 사업량 증가에 따른 사업비 확대 (3,787가구 → 50,090가구)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가구당 평균지급금액 : 839천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 생활지원비 지원 - 839천원 × 46,303가구	≒ 38,848,000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12. : 국·도비보조금 부담 확정내시
- 2022. 4. : 국·도비 성립전 예산 편성(1차)
- 2022. 5. : 국비 성립전 예산 편성(2차)
- 2022. 6. : 국비 성립전 예산 편성(3차)
- 2022. 6. : 변경내시 통보
- 2022. 매월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급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0년	- 생활지원비 지원 : 1,021가구/3,041명 - 생활지원비 지급액 : 799,381천원	
2021년	- 생활지원비 지원 : 9,235가구/30,236명 - 생활지원비 지급액 : 8,497,947천원	
2022년	- 생활지원비 지원 : 77,456가구/188,802명 - 생활지원비 지급액 : 27,564,109천원	8.12일기준

###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800,000	799,381		1,029	
2021년	8,500,000	8,497,947		2,053	
2022년	27,892,363	27,564,109		328,254	8.12일 기준 실 집행현황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희망복지팀장 홍지혜	담당자	사회복지7급 양혜지	전화	5183
-----	-----	------------	-----	------------	----	------

#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성립전)) (P - 115)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6월 ~ 2022.12월
- 사업규모 : 12,021가구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
- 예산요구 현황

(단위:천원)

구 분	2021년 예산액 (A)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F=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증감액 (D)		
계	0	5,155,133	0	0	5,155,133	
국 비	0	5,155,133			5,155,133	
도 비		0				0
시 비		0				0
기 타		0				0

## □ 예산 증감사유

-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에 대하여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사회보장기본법	제24조 제1항
근거내용	제24조(소득보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 하에서도 모든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경제활성화 및 가계부담 완화 도모
- ※ 자격별, 가구별 정액지급(보건복지부 -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사업안내)

(단위:천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 이상
생계·의료급여	400	650	830	1,000	1,160	1,310	1,450
주거·교육 차상위·한부모	300	490	620	750	870	980	1,090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5,155,133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지급대상 : 국민기초,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족 · 사업량 : 12,021가구 · 지급내용 421,700원 × 12,021가구	≡ 5,069,277	
	101-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 인건비 : 73,280원 × 14명 × 29일	≡ 29,765	
	201-01 사무관리비	· 홍보물품 비용 7,000장 × 110원 =770,000원 · 지역화폐 수수료 지급 등 55,371,000 × 1회	≡ 56,141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 6월 : 성립전 예산 편성
- 2022. 6월 ~ 8월 :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고명남	담당자	사회복지7급 권경민	전화	2621
-----	-----	------------	-----	------------	----	------

#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 (P - 115)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규모 : 107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 계층 자립 지원
- 예산요구 현황

(단위:천원)

구 분	2021년 예산액 (A)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F=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증감액 (D)	2회 추경 증감액 (E)		
계	2,006,700	1,870,000	2,111,111	-111,111	-130,000	-136,700	
국 비	1,806,030	1,683,000	1,900,000	-100,000	-117,000	-123,030	90%
도 비	60,201	56,100	63,333	-3,333	-3,900	-4,101	3%
시 비	140,469	130,900	147,778	-7,778	-9,100	-9,569	7%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사업량 감소에 따른 변경 내시 감액 반영(137명 → 107명)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제2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근거내용	제15조(자활급여)② 제1항의 자활급여는 관련 공공기관·비영리법인·시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	
	제20조(자활근로)① 보장기관은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과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근로기회의 제공을 위하여 수급자에게 공익성이 높은 사업이나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에서 유급(有給)으로 근로(이하 "자활근로"라 한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자활근로 참여자 및 전문가 인건비, 사업단 재료구입비 등 지원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 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26,000,000원×5월	= -130,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매분기 : 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보조금 교부
- 매 월 : 자활급여 지급
- 수 시 : 자활근로 참여자 발굴 및 근무지 배치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0년	· 자활근로사업(연인원 : 1,104명 / 월평균 92명) - 연도말 참여 현황 / 시 13명 + 자활센터 79명	
2021년	· 자활근로사업(연인원 : 1,190명 / 월평균 114명) - 연도말 참여 현황 / 시 13명 + 자활센터 102명	
2022년	· 자활근로사업(연인원 : 770명 / 월평균 110명) - '22년 7월말 참여 현황 / 시 14명 + 자활센터 90명	8.12일 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1,587,400	1,468,538	-	118,862	
2021년	2,006,700	1,758,613	-	248,087	
2022년	2,111,111	1,544,551		566,560	8.12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고명남	담당자	사회복지7급 양현주	전화	2623
-----	-----	------------	-----	------------	----	------

# (지역자활센터종사자 특수근무수당) (P - 115)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규모 : 6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부가 급여
- 예산요구 현황

(단위:천원)

구 분	2021년 예산액 (A)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F=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증감액 (D)	2회 추경 증감액 (E)		
계	8,400	10,400	8,450	0	1,950	2,000	
국 비							
도 비	2,520	3,120	2,535	0	585	600	30%
시 비	5,880	7,280	5,915	0	1,365	1,400	70%
기 타		0				0	

## □ 예산 증감사유

- 지역자활센터종사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한 특수근무수당 지원(5년 이상 근무자 증가분 반영)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9호
근거내용	제7조(자활사업 지원) 도지사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활사업실시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9. 그밖에 도지사가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부가 급여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지역자활센터종사자 특수근무수당	301-01 사회복지장적수혜금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 근무기간 5년 이상 150,000원×3명×3월 = 1,350,000원 - 근무기간 5년 미만 100,000원×2명×3월 = 600,000원	= 1,95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매 월 :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0년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 사 업 량 : 4명 - 집 행 액 : 6,450천원 - 월 150천원 × 5년이상 3명 / 월 100천원 × 5년미만 1명	
2021년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 사 업 량 : 5명 - 집 행 액 : 7,800천원 - 월 150천원 × 5년이상 3명 / 월 100천원 × 5년미만 2명	
2022년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 사 업 량 : 6명 - 집 행 액 : 4,450천원 - 월 150천원 × 5년이상 5명 / 월 100천원 × 5년미만 1명	8.12일 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8,400	6,450	-	1,950	
2021년	7,800	7,800	-	0	
2022년	8,450	6,150	-	2,300	8.12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고명남	담당자	사회복지7급 양현주	전화	2623
-----	-----	------------	-----	------------	----	------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P - 116)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관내
- 사업규모 : 9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사기 진작
- 예산요구 현황

(단위:천원)

구 분	2021년 예산액 (A)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F=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증감액 (D)	2회 추경 증감액 (E)		
계	4,800	5,250	4,900	0	350	450	
국 비							
도 비	4,800	5,250	4,900	0	350	450	100%
시 비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단 전문가 인력 1명 채용(2022년 4월, 기간제)에 따른 증액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향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제8조 제1항 제6호
근거내용	제5조(도지사의 책무) ②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6.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사업 지원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본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input type="checkbox"/>	보조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사기 진작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 50,000원×1명×7월	= 35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매 월 : 처우개선비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0년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 기준금액 : 50,000원 - 사 업 량 : 8명 - 집 행 액 : 4,750천원	
2021년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 기준금액 : 50,000원 - 사 업 량 : 8명 - 집 행 액 : 4,800천원	
2022년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 기준금액 : 50,000원 - 사 업 량 : 9명 - 집 행 액 : 2,800천원	8.12일 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4,800	4,750	-	50	
2021년	4,800	4,800	-	0	
2022년	4,800	2,800	-	2,000	8.12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고명남	담당자	사회복지7급 양현주	전화	2623
-----	-----	------------	-----	------------	----	------

#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P - 116)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치 : 관내
- 사업규모 : 연 12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저소득(국민기초, 차상위) 가구 중 단독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중증질환자 및 한부모가정 등에게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
- 예산요구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예산액 (A)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F=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증감액 (D)	2회 추경 증감액 (E)		
계	114,950	54,171	47,143	0	7,028	-60,779	
국 비	80,465	37,920	33,000		4,920	-42,545	70%
도 비		0				0	
시 비	34,485	16,251	14,143		2,108	-18,234	3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서비스 이용대상자 및 금액 증가에 따른 변경내시 증액 반영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근거내용	제4조(국가등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용이 장려되는 여건을 조성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마련하여야 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본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input type="checkbox"/>	보조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재가 간병·가사 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기여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308-11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서비스 이용료 195,220원×12명×3개월	≡ 7,028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 08월 :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 매월 5일, 15일, 25일 : 서비스 비용 정기 지급
- 분기 : 서비스 비용 예탁 (예탁기관: 사회보장정보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0년	○ 가사간병 방문관리 서비스 지원: 9명	
2021년	○ 가사간병 방문관리 서비스 지원: 13명	
2022년	○ 가사간병 방문관리 서비스 지원: 12명 지원중	8.12일 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114,950	39,707	-	75,243	
2021년	51,000	40,720	-	10,279	
2022년	47,143	47,143	-	0	8.12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고명남	담당자	사회복지8급 장민규	전화	5182
-----	-----	------------	-----	------------	----	------

# (희망키움통장 I) (P - 116)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관내
- 사업규모 : 4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수급자)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근로의욕 고취 및 탈수급 촉진
- 예산요구 현황

(단위:천원)

구 분	2021년 예산액 (A)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F=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증감액 (D)	2회 추경 증감액 (E)		
계	48,428	16,600	22,300	0	-5,700	-31,828	
국 비	43,585	14,940	20,070	0	-5,130	-28,645	90%
도 비	1,453	498	669	0	-171	-955	3%
시 비	3,390	1,162	1,561	0	-399	-2,228	7%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사업량 감소에 따른 변경 내시 감액 반영(5명 → 4명)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8 제1항
근거내용	제18조의8(자산형성지원) ①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본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input type="checkbox"/>	보조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근로사업소득 있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의 본인적립금(5만원/10만원)에 대하여 소득에 비례해서 매칭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소득 활동 지원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희망키움통장 I	308-11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 희망키움통장 I - 지급대상 : 희망키움통장 I 참여 대상자 - 사업량 : 4명 - 지급내용 : 근로소득장려금(월 평균 매칭 지원금) 345,000원×4명×12월 = 16,560,000원	= 16,6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매월 23일 ~ 30일 : 근로소득장려금 생성 및 적립
- 분기 : 서비스 비용 예탁 (예탁기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0년	○ 희망키움통장 I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 16명	
2021년	○ 희망키움통장 I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 8명	
2022년	○ 희망키움통장 I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 6명	8.12일 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37,890	37,890	-	0	
2021년	48,428	48,428	-	0	
2022년	22,300	22,300	-	0	8.12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고명남	담당자	행정9급 최윤	전화	2624
-----	-----	------------	-----	---------	----	------

# (희망키움통장 II) (P - 116)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관내
- 사업규모 : 94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고 있는 저소득층(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근로의욕 고취 및 탈수급 촉진

## ○ 예산요구 현황

(단위:천원)

구 분	2021년 예산액 (A)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F=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증감액 (D)	2회 추경 증감액 (E)		
계	290,475	112,800	68,800	0	44,000	-177,675	
국 비	261,428	101,520	61,920	0	39,600	-159,908	90%
도 비	8,714	3,384	2,064	0	1,320	-5,330	3%
시 비	20,333	7,896	4,816	0	3,080	-12,437	7%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사업량 증가에 따른 변경 내시 증액 반영(59명 → 94명)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8 제1항
근거내용	제18조의8(자산형성지원) ①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근로사업소득 있는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대상자의 본인적립금(10만원)에 대하여 1:1 비율로 매칭한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을 적립해 지속적인 소득활동 지원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희망키움통장 II	308-11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 희망키움통장 II - 지급대상 : 희망키움통장 II 참여 대상자 - 사 업 량 : 94명 - 지급내용 : 근로소득장려금(월 평균 매칭 지원금) 100,000원×94명×12월 = 112,800,000원	= 112,8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매월 23일 ~ 30일 : 근로소득장려금 생성 및 적립
- 분기 : 서비스 비용 예탁 (예탁기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0년	○ 희망키움통장Ⅱ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 275명	
2021년	○ 희망키움통장Ⅱ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 191명	
2022년	○ 희망키움통장Ⅱ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 101명	8.12일 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268,800	268,800	-	0	
2021년	224,890	224,890	-	0	
2022년	68,800	68,800	-	0	8.12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고명남	담당자	행정9급 최윤	전화	2624
-----	-----	------------	-----	---------	----	------



# (내일키움통장) (P - 117)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관내
- 사업규모 : 20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1개월 이상 연속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대상자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근로의욕 고취 및 탈수급 촉진

## ○ 예산요구 현황

(단위:천원)

구 분	2021년 예산액 (A)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F=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증감액 (D)	2회 추경 증감액 (E)		
계	20,000	23,888	5,600	9,688	8,600	3,888	
국 비	18,000	21,499	5,040	8,719	7,740	3,499	90%
도 비	600	717	168	291	258	117	3%
시 비	1,400	1,672	392	678	602	272	7%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사업량 증가에 따른 변경 내시 증액 반영(13명 → 20명)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8 제1항
근거내용	제18조의8(자산형성지원) ①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본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input type="checkbox"/>	보조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자산형성 지원으로 자립·자활 촉진
- 자활근로자의 본인적립금(5만원/10만원)에 대하여 1:1 비율로 내일근로장려금 매칭을 통한 자립자금 지원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내일키움통장	308-11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 지급대상 : 내일키움통장 참여 대상자 · 사업량 : 20명 · 지급내용 : 내일근로장려금(10만원/5만원 정액지원금) - 99,000원×20명×12월 =23,760,000원	= 23,888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매월 23일 ~ 30일 : 근로소득장려금 생성 및 적립
- 분기 : 서비스 비용 예탁 (예탁기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0년	○ 내일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 22명	
2021년	○ 내일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 30명	
2022년	○ 내일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 29명	8.12일 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25,034	25,034	-	0	
2021년	26,305	26,305	-	0	
2022년	15,288	15,288	-	0	8.12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고명남	담당자	행정9급 최윤	전화	2624
-----	-----	------------	-----	---------	----	------

# (청년희망키움통장) (P - 117)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관내
- 사업규모 : 4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탈수급 지원
- 예산요구 현황

(단위:천원)

구 분	2021년 예산액 (A)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F=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증감액 (D)	2회 추경 증감액 (E)		
계	30,000	17,366	16,003	1,144	219	-12,634	
국 비	27,000	15,629	14,403	1,029	197	-11,371	90%
도 비	900	521	480	34	7	-379	3%
시 비	2,100	1,216	1,120	81	15	-884	7%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매칭 지원금 인상에 따른 변경 내시 증액 반영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8 제1항
근거내용	제18조의8(자산형성지원) ①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본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input type="checkbox"/>	보조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생계수급 청년(만 15~39세)에게 소득에 비례하여 매칭한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해 지속적인 소득 활동 지원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청년희망키움통장	308-11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 청년희망키움통장 - 지급대상 : 청년희망키움통장 참여 대상자 - 사 업 량 : 4명 - 지급내용 : 청년희망키움 장려금 361,000원×4명×12월 = 17,328,000원	= 17,366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매월 23일 ~ 30일 : 근로소득장려금 생성 및 적립
- 분기 : 서비스 비용 예탁 (예탁기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0년	○ 청년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 8명	
2021년	○ 청년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 12명	
2022년	○ 청년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 4명	8.12일 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41,200	41,200	-	0	
2021년	30,000	30,000	-	0	
2022년	16,003	16,003	-	0	8.12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고명남	담당자	행정9급 최윤	전화	2624
-----	-----	------------	-----	---------	----	------

# (청년저축계좌) (P - 117)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관내
- 사업규모 : 61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청년의 자산형성지원으로 자립지원 촉진
- 예산요구 현황

(단위:천원)

구 분	2021년 예산액 (A)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F=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증감액 (D)	2회 추경 증감액 (E)		
계	167,100	215,790	229,321	13,350	-26,881	48,690	
국 비	150,390	194,210	206,389	12,015	-24,194	43,820	90%
도 비	5,013	6,474	6,880	400	-806	1,461	3%
시 비	11,697	15,106	16,052	935	-1,881	3,409	7%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사업량 감소에 따른 변경 내시 감액 반영(69명 → 61명)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8 제1항
근거내용	제18조의8(자산형성지원) ①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결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청년(만15세~39세)에게 본인적립금에 1:3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을 통해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 촉진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청년저축계좌	308-11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 청년저축계좌 - 지급대상 : 청년저축계좌 참여 대상자 - 사 업 량 : 61명 - 지급내용 : 근로소득장려금 300,000원×61명×12월 = 219,600,000원	= 215,79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매월 23일 ~ 30일 : 근로소득장려금 생성 및 적립
- 분기 : 서비스 비용 예탁 (예탁기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0년	○ 청년저축계좌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 41명	
2021년	○ 청년저축계좌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 63명	
2022년	○ 청년저축계좌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 62명	8.12일 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66,000	66,000	-	0	
2021년	167,100	167,100	-	0	
2022년	229,321	229,321	-	0	8.12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고명남	담당자	행정9급 최윤	전화	2624
-----	-----	------------	-----	---------	----	------

# (인력운영비(무한돌봄센터 운영지원)) (P - 118)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치 : 김포시
- 사업규모 : 5명(민간사례관리사)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민간사례관리 전문가를 통해 복합적 욕구와 문제를 가진 대상자의 통합사례관리
- 예산요구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예산액 (A)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F=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증감액 (D)	2회 추경 증감액 (E)		
계	275,800	294,074	284,074	0	10,000	18,274	
국 비		0				0	
도 비	55,160	58,815	56,815		2,000	3,655	
시 비	220,640	235,259	227,259		8,000	14,619	
기 타		0				0	

## □ 예산 증감사유

- 인건비 인상분(호봉 승급) 반영에 따른 예산 증액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경기도무한돌봄센터 설치·운영지원 조례	제4조, 제5조
근거내용	제4조(기능)도 무한돌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5조(사업비 등의 지원)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무한돌봄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업 및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회복지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민간사례관리사의 인건비 지원
- 인건비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무한돌봄센터 운영지원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	· 민간사례관리사 인건비 - 500,000원×5명×4월	= 10,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12. : 도비보조금 부담 확정내시
- 2022.06. : 도 변경내시 통보
- 2022 매월 : 급여, 수당 등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0년	- 민간사례관리사 5명 인건비 지급 : 258,709천원	
2021년	- 민간사례관리사 5명 인건비 지급 : 273,964천원	
2022년	- 민간사례관리사 5명 인건비 지급 : 171,106천원 · 인건비 162,006천원 · 수당 4,900천원 · 여비 4,200천원	8.12일 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267,800	258,709	-	9,091	
2021년	275,800	273,964	-	1,836	
2022년	284,074	171,106		112,968	8.12.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희망복지팀장 홍지혜	담당자	사회복지6급 이은혜	전화	2632
-----	-----	------------	-----	------------	----	------



# (의료급여사업 지원(국내여비)) (P - 320)

##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규모 : 3명(의료급여관리사)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의료급여관리사 출장 여비를 지원하여 의료급여 업무의 원활한 운영 도모
- 예산요구 현황

(단위:천원)

구 분	2021년 예산액 (A)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F=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증감액 (D)	2회 추경 증감액 (E)		
계	3,200	3,900	6,900	0	-3,000	700	
국 비	2,560	3,120	5,520		-2,400	560	
도 비	448	546	966	0	-420	98	
시 비	192	234	414	0	-180	42	

### □ 예산 증감사유

- 국비지원 축소에 따른 예산(여비 감액) 반영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의료급여법	제26조 제2항
근거내용	제2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② 기금은 급여비용, 대지급에 드는 비용, 제33조제2항에 따른 업무 위탁에 드는 비용 또는 그 밖의 의료급여 업무에 직접 드는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올바른 의료이용 관행 유도, 다빈도 이용자 집중관리 등을 위한 관내·외 출장 시 의료급여관리사 여비 지원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의료급여사업 지원	202-01 국내여비	· 지급대상 : 의료급여관리사 3명 · 지급내용 : 국내여비 경정(108,330원*3명*12회) - 기정(191,660원*3명*12회)	= -3,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 11월 :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
- 2022. 7월 :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 2022. 8월 ~ : 매월 의료급여관리사 여비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0년	- 의료급여관리사 3명 여비 지급	
2021년	- 의료급여관리사 3명 여비 지급	
2022년	- 의료급여관리사 3명 여비 지급	8.12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7,200	1,498	-	5,702	
2021년	3,200	1,710	-	1,490	
2022년	6,900	1,090	-	5,810	8.12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의료급여팀장 김수희	담당자	사회복지7급 추유선	전화	2622
-----	-----	------------	-----	------------	----	------

# (의료급여사업 지원(본인부담금 지원)) (P - 320)

##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규모 : 7,378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을 경감하여 건강한 생활지원
- 예산요구 현황

(단위:천원)

구 분	2021년 예산액 (A)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F=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증감액 (D)	2회 추경 증감액 (E)		
계	556,600	517,000	490,900	100	26,000	-39,600	
국 비	445,280	413,600	392,720	80	20,800	-31,680	
도 비	77,924	72,380	68,726	14	3,640	-5,544	
시 비	33,396	31,020	29,454	6	1,560	-2,376	

### □ 예산 증감사유

- 의료급여 수급권자 실인원 수 증가(7,345명 → 7,378명)에 따른 예산 증액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의료급여법	제12, 13조
근거내용	제12조(요양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제28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기간 중인 의료급여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을 하였을 때에는 그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한다 제13조(장애인 및 임산부에 대한 특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수급권자에게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이하 이 조에서 "보조기기"라 한다)에 대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20.10월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요양비, 본인부담보상금,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등 지원을 통한 재정적 부담 완화 및 의료복지 향상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의료급여 사업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지급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7,378명 · 지급내용 :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지원 경정 (517,000,000원) - 기정 (491,000,000원) = 26,000 * 요양비 및 보조기기 지원, 본인부담보상금 및 환급금 등	26,000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 7월 :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
- 분기별 : 입양아동 정산진료비 정산 지급
- 반기별 : 본인부담 보상금 지급
- 수 시 : 본인부담금 지원 접수 및 지급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0년	· 요양비 지원 : 881건, 189,072천원 · 보조기기 지원 : 148건, 147,403천원 · 건강생활유지비잔액 : 2,960건, 88,846천원 · 입양아동 정산진료비 : 2,316건, 16,916천원 · 본인부담 보상금 및 기타 환급금 : 1,163건, 36,410천원	
2021년	· 요양비 지원 : 971건, 205,630천원 · 보조기기 지원 : 149건, 137,889천원 · 건강생활유지비잔액 : 3,395건, 107,243천원 · 입양아동 정산진료비 : 1,675건, 17,079천원 · 본인부담 보상금 및 기타 환급금 : 1,212건, 21,685천원	
2022년	· 요양비 지원 : 485건, 113,604천원 · 보조기기 지원 : 73건, 69,151천원 · 건강생활유지비잔액 : 1,697건, 105,872천원 · 입양아동 정산진료비 : 834건, 4,378천원 · 본인부담 보상금 및 기타 환급금 : 606건, 5,000천원	8.12일 기준

###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544,400	479,167	-	65,233	
2021년	556,600	489,526	-	67,074	
2022년	491,000	293,505	-	197,495	8.12일 기준 실 집행현황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의료급여팀장 김수희	담당자	사회복지7급 추유선	전화	2622
-----	-----	------------	-----	------------	----	------

#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등 예탁금) (P - 320)

##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치 : 관내·외 의료기관
- 사업규모 : 7,378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의료서비스 제공하여 저소득층의 의료복지 증진

###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예산액 (A)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F=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증감액 (D)	2회 추경 증감액 (E)		
계	2,628,450	2,909,120	2,910,360	0	-1,240	280,670	
국 비							
도 비							
시 비	2,628,450	2,909,120	2,910,360		-1,240	280,670	

### □ 예산 증감사유

- 국비지원 변경에 따른 시비 예산 감액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의료급여법	제27조제1항
근거내용	제27조(급여비용의 예탁) ① 제33조제2항에 따라 급여비용의 지급업무가 위탁된 경우 시·도지사는 기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정급여비용을 급여비용지급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본 <input type="checkbox"/>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input type="checkbox"/>	보조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2020.10월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하여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하여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 도모
- 국도비 보조내시 및 부담지시

(단위 : 천원)

예산액	국비 (80%)	도비 (14%)	시비 (6%)	비고
48,485,290	38,788,230	6,787,940	2,909,120	

※ 국도비는 도에서 집행

○ 사업내용

- 진료비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입원외래 진료 시 급여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
- 건강생활유지비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제 도입에 따라 사전에 의료비 총당 등을 위하여 1인당 매월 6천원의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등 예탁금	308-07 자치단체간부담금	·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7,378명 · 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지원 = 경정(2,909,120,000원) - 기정(2,910,360,000원)	-1,240	시비6%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 11월 :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
- 2022년 1월, 4월 : 진료비 예탁금 지급 (건강보험공단)
- 2022년 7월 :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 2022년 9월 : 진료비 예탁금 지급 예정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0년	·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정산(3회)	
2021년	·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정산(4회)	
2022년	·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정산(2회)	8.12일 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2,368,362	2,368,362	-	0	
2021년	2,628,450	2,628,450	-	0	
2022년	2,910,360	2,182,770		727,590	8.12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의료급여팀장 김수희	담당자	사회복지7급 추유선	전화	2622
-----	-----	------------	-----	------------	----	------

#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원) (P - 321)

##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규모 : 2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질병빈곤 등 복합적 문제를 갖고 있는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율적인 건강관리 능력향상 및 약물 오남용 등 집중사례를 통해 의료급여 재정 절감

○ 위 치 : 김포시 관내

### ○ 예산요구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예산액 (A)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F=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증감액 (D)	2회 추경 증감액 (E)		
계	104,720	109,723	104,500	4,400	823	5,003	
국 비	83,777	87,778	83,600	3,520	658	4,001	
도 비	14,661	15,362	14,630	616	116	701	
시 비	6,282	6,583	6,270	264	49	301	
기 타		0				0	

### □ 예산 증감사유

- 道 2022년도 의료급여관리사 성과 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포상금(2명분) 예산 반영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의료급여법	제5조의2 제2항
근거내용	제5조의2(사례관리)② 제1항에 따른 사례관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료급여 관리사를 둔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본 <input type="checkbox"/>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input type="checkbox"/>	보조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2021.10월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올바른 의료이용 관행 유도, 여러 의료급여기관 이용자 집중 관리 등 의료급여사례관리 담당자 인건비 지원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인력운영비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원)	101-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 지급대상 : 의료급여관리사 2명 · 지급내용 : 성과포상금 - 411,500원 × 2명 경정(109,723,000원) - 기정(108,900,000원)	= 823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 8월 : 국도비보조금 부담 변경 내시
- 2022. 매월 : 급여 지급
- 2022. 10월 : 성과포상금 지급 예정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0년	· 공무직 근로자 3명 인건비 지급	
2021년	· 공무직 근로자 3명 인건비 지급	
2022년	· 공무직 근로자 3명 인건비 지급	8.12일 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99,430	99,430		0	
2021년	104,720	104,720		0	
2022년	108,900	65,124		43,776	8.12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의료급여팀장 김수희	담당자	사회복지7급 추유선	전화	2622
-----	-----	------------	-----	------------	----	------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

**교육청소년과**



# ((대응)푸른솔중 농구장 확장 및 개보수 공사) (P - 121)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9월 ~ 2023.2월
- 사업규모 : 농구장(193㎡→363㎡)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농구장 확장 및 개보수 사업으로 체육수업 활성화 및 학생들의 체력 증진
- 예산요구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예산액 (A)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F=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증감액 (D)	2회 추경 증감액 (E)		
계	0	67,566	0	0	67,566	67,566	
국 비		0				0	
도 비		0				0	
시 비	0	67,566	0	0	67,566	67,566	
기 타		0				0	

## □ 예산 증감사유

- 학생 수 증가로 동시에 여러 학급이 체육수업을 하게 되었으나 현재 사용중인 반코트 농구장이 협소하여 학생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육 활동을 위해 코트 확장과 개보수 필요 (농구장 확장면적 : 193㎡→363㎡)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김포시 교육경비에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
근거내용	김포시장은 김포시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 교육경비를 일반회계 세출총액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김포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21.11월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구축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b>합 계</b>	<b>67,566</b>	
푸른솔중 농구장 확장 및 개보수 공사	308-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 설계비 : 119,595,300원 × 6.16% × 50% = 3,684 · 시설비(토목) : 119,595,300원 × 1식 × 50% = 59,798 · 시설비(전기) : 6,171,000원 × 1식 × 50% = 3,085 · 농구대 : 1,998,000원 × 1대 × 50% = 999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9. ~ 2023.02. : 농구장 확장 및 개보수 공사(확장대상지 수목 이전 포함)
- 2023.02. : 실적보고

□ 위치도 및 사진



푸른솔중학교 사업대상지(농구장확장)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육청소년과	교육정책팀장 최재욱	담당자	행정6급 임은선	전화	2658
-----	--------	------------	-----	----------	----	------

# ((대응)통진중 문화예체능관 조성 사업) (P - 121)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9월 ~ 2023.2월
- 위치 : 통진읍 김포대로 2165, 통진중학교
- 사업규모 : 구 축구부 합숙소(459㎡) 리모델링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구 축구부 합숙소를 문화예체능관으로 리모델링하여 학생들의 예체능 교육 활성화

## ○ 예산요구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예산액 (A)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F=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증감액 (D)	2회 추경 증감액 (E)		
<b>계</b>	0	253,839	0	0	253,839	253,839	
국 비		0				0	
도 비		0				0	
시 비	0	253,839	0	0	253,839	253,839	
기 타		0				0	

## □ 예산 증감사유

- 본관 지하에 위치한 예체능 공간인 국악실은 협소하고 누수가 심해 악기가 손상되는 등 원활한 교육 활동이 어려움
- 구 축구부 합숙소를 학생들의 문화·예술·체육 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활용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김포시 교육경비에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
근거내용	김포시장은 김포시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 교육경비를 일반회계 세출총액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김포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21.11월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기존 축구부 합숙소를 문화예체능관으로 리모델링해 음악실, 무용실, 합주실, 국악실로 활용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b>합 계</b>	<b>253,839</b>	
통진중 문화예체능관 조성사업	308-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 리모델링 건축공사비 : 406,684,000원 × 1식 × 50% · 전기공사 : 41,472,000원 × 1식 × 50% · 소방공사 : 24,883,000원 × 1식 × 50% · 공조공사 : 9,640,000원 × 1식 × 50% · 설계, 감리 등 : 25,000,000원 × 1식 × 50%	= = = = = =	203,342 20,736 12,441 4,820 12,5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 09. ~ 2023. 02. : 구 축구부 합숙소 리모델링(문화예체능관 조성)
- 2023.03. : 실적보고

□ 위치도 및 사진

	
국악실 내부 모습(본관 지하)	리모델링 대상 건물(구 축구부 합숙소)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육청소년과	교육정책팀장 최재욱	담당자	행정6급 임은선	전화	2658
-----	--------	------------	-----	----------	----	------

#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체육복 지원 사업) (P - 121)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월 ~ 12월 ○ 위 치 : 김포시
- 사업규모 :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소재 중·고교 신입생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 지원과 함께 대안교육기관 중·고등과정 1학년과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에게도 체육복 구입비용을 지원하여 형평성 있는 교육복지 실현

##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예산액 (A)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F=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증감액 (D)	2회 추경 증감액 (E)		
계	0	1,750	2,800	0	-1,050	1,750	
국 비		0				0	
도 비		0				0	
시 비	0	1,750	2,800	0	-1,050	1,750	
기 타		0				0	

## □ 예산 증감사유

- 경기도 대응 대안교육기관 및 관외 학교 재학생들에게도 교복비와 동일하게 체육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복비 감액으로 동일한 비율 감액.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김포시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제2조(정의), 제4조(지원대상)
근거내용	제2조(정의) 3. 교복이란 대안교육기관 및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 (체육복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지원 대상) 입학일 또는 전학일 현재까지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 등을 입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 및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학교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말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연·출자의회결
경상■	자본□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21.11월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대안교육기관 중·고 1학년 및 타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입학생 : 40명→25명(1인당 : 7만원)
- ※ 경기도 대응 대안교육기관 등 교복비 지원사업 대상과 동일한 인원으로 편성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050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체육복 지원 사업	301-01 사회 보장적 수혜금	- 기존 : 70,000원 × 40명 = 2,800,000원 - 변경 : 70,000원 × 25명 = 1,750,000원	= -1,05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3. ~ 2022.12. : 체육복 지원 신청 접수 및 지원금 지급
- 2023.01. : 정산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0년	해당없음	
2021년	해당없음	
2022년	- 지원대상 : 3명(대안교육기관 : 3명) - 지원액 : 186,000원	8.12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해	당	없	음	
2021년	해	당	없	음	
2022년	1,750	186	-	1,564	8.12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육청소년과	교육정책팀장 최재욱	담당자	행정7급 김우정	전화	2580
-----	--------	------------	-----	----------	----	------



#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사업) (P - 121)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월 ~ 12월
- 사업규모 :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소재 중·고교 신입생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일반 중·고등학교 신입생이 아닌 대안교육기관 중·고등과정 1학년과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 등 사각지대 학생의 교복비를 지원하여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예산액 (A)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F=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증감액 (D)	2회 추경 증감액 (E)		
계	15,000	7,500	12,000	0	-4,500	-7,500	
국 비		0				0	
도 비	7,500	3,750	6,000	0	-2,250	-3,750	
시 비	7,500	3,750	6,000	0	-2,250	-3,750	
기 타		0				0	

## □ 예산 증감사유

- 2022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사업 변경내시 반영 (경기도 교육협력과-6094(2022. 7. 22.)호)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제4조, 제5조
근거내용	제4조(지원 대상) 교복 지원대상은 입학일 또는 전학일 현재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중·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과정의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학생 2.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과정에 입학한 1학년 학생 제5조(지원 금액)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본 <input type="checkbox"/>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2021.11월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김포시 사업량 40명→25명으로 감소(1인당 : 300,000원)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4,500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사업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기존 : 300,000원 × 40명 = 12,000,000원 - 변경 : 300,000원 × 25명 = 7,500,000원 =	-4,5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 ~ 2022.12. : 접수 및 교복비 지원
- 2023.01. : 정산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0년	- 지원대상 : 26명 (대안교육기관 : 16명, 타시도 중학교 : 10명) - 지원액 : 7,292천원	
2021년	- 지원대상 : 29명 (대안교육기관 : 21명, 타시도 중학교 : 4명) - 지원액 : 8,300천원	
2022년	- 지원대상 : 13명 (대안교육기관 : 13명) - 지원액 : 4,069천원	8.12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15,000	7,292	-	7,708	
2021년	12,000	8,300	-	3,700	
2022년	12,000	4,069	-	7,931	8.12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육청소년과	교육정책팀장 최재욱	담당자	행정7급 김우정	전화	2580
-----	--------	------------	-----	----------	----	------

# (고촌중학교 수영장 위탁사업비 지원) (P - 121)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9월 ~ 12월
- 위치 : 고촌읍 신곡로 106 고촌중학교 내 수영장
- 사업규모 : 공공체육시설(고촌중학교 내 수영장) 관리 운영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통해 이용편의 및 시민건강 증진
- 예산요구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예산액 (A)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F=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증감액 (D)	2회 추경 증감액 (E)		
계	0	74,995	0	0	74,995	74,995	
국 비		0				0	
도 비		0				0	
시 비	0	74,995	0	0	74,995	74,995	
기 타		0				0	

## □ 예산 증감사유

- 효율적인 수영장 운영관리를 위해 김포도시관리공사를 통한 위탁 운영 및 대행사업비 편성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	제20조(위탁관리)
근거내용	제20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지방 공기업법」에 따라 김포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이나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type="checkbox"/>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본 <input type="checkbox"/>	미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재원 <input type="checkbox"/>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수영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지원으로 효율적인 수영장 운영관리
- 쾌적한 생활체육 환경 제공으로 시민건강 및 이용편의 증진
- 오전시간 생존수영 전용 수영장 운영으로 관내 부족한 생존수영 가능 수영장 확보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b>합 계</b>	<b>74,995</b>	
고촌중학교 수영장 운영 대행사업	309-01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 고촌중학교 수영장 운영 경비 -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 34,314,000원 - 운영경비(제세공과금 등) : 37,181,000원	= 71,495	
	404-01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 고촌중학교 수영장 운영 물품 구입 (세탁기 1대, TV 1대, 냉장고 2대)	= 3,500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7.04. : 2017년도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학교수영장건립) 교부
- 2018.10. : 고촌중학교 체육관 및 수영장 건립 관련 기본협약 체결
- 2021.09. : 고촌중학교 복합시설체육관 사용승인
- 2022.07. : 고촌중학교 수영장 운영을 위한 세부운영 협약 체결
- 2022.08. : 고촌중학교 수영장 위탁 협약체결
- 2022.10. ~ 11. : 인력 채용 및 운영 준비
- 2022.12. : 시범운영 및 개관(예정)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육청소년과	교육정책팀장 최재욱	담당자	행정6급 임은선	전화	2658
-----	--------	------------	-----	----------	----	------

# (청소년 보호환경 조성) (P - 122)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연중 ○ 위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청소년증 제작 등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청소년에게 생활편의제공하고 보호환경 조성하여 건강한 성장지원
- 예산요구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예산액 (A)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F=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증감액 (D)	2회 추경 증감액 (E)		
계	19,300	27,770	21,020	0	6,750	8,470	
국 비							
도 비							
시 비	19,300	27,770	21,020	0	6,750	8,47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학교별 단체발급 신청으로 인한 제작 매수 증가(기존 : 1,200매 → 변경 : 2,405매)  
- 청소년증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여성가족부 및 경기도 권장사항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청소년기본법	제8조
근거내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21.11월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공적 신분확인 및 교통수단, 문화시설 등에서의 우대혜택 제공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청소년증 이용을 활성화하여 청소년에게 생활편의 및 문화 체험 기회를 보장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6,750	
청소년 보호환경 조성	201-01 사무관리비	· 청소년증 제작 : 5,600원 × 1,205매	6,75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 ~ 12. : 수시 접수 및 배부, 매월 제작비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0년	- 청소년증 제작 1,312건 (교통 : 976건, 비교통 : 336건)	
2021년	- 청소년증 제작 1,361건 (교통 : 867건, 비교통 : 494건)	
2022년	- 청소년증 제작 1,516건 (교통 : 961건, 비교통 : 555건)	8.12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15,745	14,579	-	1,166	
2021년	19,300	18,100	-	1,200	
2022년	21,020	12,960		8,060	8.12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육청청소년과	청소년팀장 남혜진	담당자	행정8급 성은영	전화	2596
-----	---------	-----------	-----	----------	----	------

# (청소년 교류활동) (P - 122)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10월 ~ 11월 ○ 위치 : 제주도
- 사업규모 : 40명(김포시 청소년 20명, 제주도 청소년 20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청소년 교류활동 및 역사문화 탐방을 통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예산액 (A)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F=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증감액 (D)	2회 추경 증감액 (E)		
계	20,000	30,000	0	0	30,000	10,000	
국 비							
도 비							
시 비	20,000	30,000	0	0	30,000	10,00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코로나19로 침체된 청소년 교류활동 운영의 방향 전환 및 문화체험 활동 기회 제공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
근거내용	① 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21.11월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청소년 주도성 강화 선정 도시와의 교류 활동으로 관내 청소년 자치활동 활성화 도모
- 역사문화유산 탐방을 통한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다양한 경험 제공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0,000	
청소년 교류활동	308-11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 청소년 문화탐방 및 교류활동(40명)	= 30,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9. : 계획 수립 및 참가자 선정
- 2022.09. : 사업대상지 사전답사
- 2022.10. ~ 11. : 청소년 국내교류활동
- 2022.12. : 사업 결과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0년	(미실시)	*코로나19로 사업 미실시
2021년	- 기 간 : 2021.10.23. ~ 12.05. 7회기(비대면) - 사업대상 : 총 40명 / 김포시·하택시 중·고 청소년 각 20명 - 주요내용 : 4차산업 플랫폼 활용한 세계시민교육, 환경이해(키트, 교육, 토의), 소통 등	
2022년	-	8.12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30,000	-	-	30,000	*코로나19로 사업 미실시
2021년	20,000	20,000	-	-	
2022년	-	-	-	-	8.12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육청소년과	청소년팀장 남혜진	담당자	행정8급 성은영	전화	2596
-----	--------	-----------	-----	----------	----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60,716	
(재)김포시 청소년재단 운영	306-01 출연금	· 사무국	= -279,456	
		· 통진청소년문화의집	= -2,080	
		· 사우청소년문화의집	= 15,000	
		· 청소년수련원	= 5,82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 ~ 12. : 분기별 출연금 지급
- 2023.01. :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0년	청소년재단 11개 사업장 운영비 및 사업비 출연	
2021년	청소년재단 11개 사업장 운영비 및 사업비 출연	
2022년	청소년재단 11개 사업장 운영비 및 사업비 출연	8.12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8,599,209	7,579,162	-	1,020,047	
2021년	8,973,116	8,175,849	-	797,267	
2022년	9,546,788	9,546,788	-	-	8.12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육청소년과	청소년팀장 남혜진	담당자	행정7급 황수정	전화	2595
-----	--------	-----------	-----	----------	----	------

##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P - 122)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연중.   ○ 위치 : 김포시 결포로 76 (중봉청소년수련관 등)
- 사업규모 : 청소년이동쉼터 1개소(대형버스 1대 및 사무실)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위기청소년 발굴 및 지원을 통한 가정·학교·사회 복귀 도모
- 예산요구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예산액 (A)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F=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증감액 (D)	2회 추경 증감액 (E)		
계	300,400	345,971	345,771	0	200	45,571	
국 비	149,913	160,924	160,824	0	100	11,011	
도 비	22,487	24,131	24,123	0	8	1,644	
시 비	128,000	160,916	160,824	0	92	32,916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에너지가격 상승 등으로 운영이 어려운 취약시설에 냉난방비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운영 도모
- 2022년 청소년복지시설 냉난방비 긴급지원 확정내시(경기도 청소년과-13009(2022.8.5.)호)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0조
근거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관련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21.11월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22.7.20.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관련('취약시설에 대한 냉·난방비 등 긴급지원')
- 에너지가격 상승 등으로 운영이 어려운 취약계층 돌봄시설에 냉난방비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운영 도모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00	
청소년쉼터 냉·난방비 긴급지원	308-11 공기관등에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 운영비(냉·난방비) 지원 =	2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8. : 2022년 경기도 청소년복지시설 냉난방비 긴급지원 확정내시 통보
- 2022.09. ~ 12. : 청소년이동쉼터 냉난방비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0년	- 운영실적 : 72,033건(명) - 세부추진사항 : 위기청소년지원사업(218회-47,794명), 상담 및 예방교육사업(898명), 지역연계사업(13,033건), 코로나 대안사업(10,308명)	
2021년	- 운영실적 : 59,330건(명) - 세부추진사항 : 위기청소년지원사업(36,850건), 자원연계지원사업(14,840명), 특성화사업(1,566명), 기타(6,074명)	
2022년	- 운영실적 : 41,152건(명) - 세부추진사항 : 위기청소년지원사업(20,929건), 자원연계지원사업(4,350명), 특성화사업(1,189명), 기타(14,684명)	8.12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312,762	312,762	-	-	
2021년	300,400	300,400	-	-	
2022년	345,771	252,258	-	93,513	8.12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육청소년과	청소년팀장 남혜진	담당자	행정7급 황수정	전화	2595
-----	--------	-----------	-----	----------	----	------

# (성인문해교육운영(보조)(성립전)) (P - 123)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7월 ~ 12월 ○ 위 치 : 관내 수강생 자택
- 사업규모 : 13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교육 소외계층 대상 강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맞춤형 문해교육 지원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예산액 (A)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F=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증감액 (D)	2회 추경 증감액 (E)		
계	10,000	16,000	0	0	16,000	6,000	
국 비	5,000	8,000			8,000	3,000	
도 비		0				0	
시 비	5,000	8,000	0	0	8,000	3,000	
기 타		0				0	

## □ 예산 증감사유

- 2022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공모 선정 및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22. 3. 30.)에 따른 매칭 사업비 편성

## □ 법적근거

근거법령	평생교육법	제39조 제1항, 제3항
근거내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신규사업□	계속사업■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경상■	자본□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21.11월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2021년 시범사업 운영 결과 학습수요 증가
- 교육 소외계층(비문해자, 이주여성 등)을 위해 가정으로 강사파견 및 교재 등 지원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공 통		합 계	16,000	
성인문해교육 운영(보조)	201-01 사무관리비	◎교재구입 및 현수막 제작 · 교재구입 : 5,000원 × 20명 × 5권 · 현수막 : 50,000원 × 10개	= 500 = 500	
	301-12 기타보상금	◎강사수당 : 30,000원 × 5명 × 4시간 × 25회	= 15,000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 ~ 03. : 교육부 주관 『2022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공모 선정
- 2022.03.30. :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 2022.07. ~ 11. : 사업 추진
- 2022.12. :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0년	○ 2개 프로그램 개설 및 22명 모집(코로나19로 대면교육이 어려워짐에 따라 프로그램 미운영)	
2021년	○ 사업기간 : 2021. 8월~12월 ○ 장 소 : 수강생 자택 ○ 참여인원 : 10개소/12명 ○ 주요내용 : 가정방문형 문해교실 「어디든 학교」 운영	
2022년	○ 『2022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찾아가는 문해교실 부문 공모 선정	8.12일기준

###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14,000	113		13,887	
2021년	10,000	8,673		1,327	
2022년	8,000	0		8,000	8.12일 기준 실 집행현황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팀장 김지선	담당자	임기제마금 이지은	전화	5149
-----	--------	------------	-----	-----------	----	------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성립전)) (P - 123)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5월 ~ 11월 ○ 위 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24개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지역에 기반한 장애인의 역량 개발 지원 및 지역 중심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 ○ 예산요구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예산액 (A)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F=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증감액 (D)	2회 추경 증감액 (E)		
계	200,000	100,000	0	0	100,000	-100,000	
국 비	100,000	50,000			50,000	-50,000	
도 비		0				0	
시 비	100,000	50,000	0	0	50,000	-50,000	
기 타		0				0	

## □ 예산 증감사유

-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주관 『2022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 공모 선정
- 김포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에 따른 예산 편성

## □ 법적근거

근거법령	평생교육법 김포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제3조 및 제5조제1항
근거내용	제5조(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 임무)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의 지원)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각 호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3.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21.11월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다양한 평생학습 지원
-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 촉진 및 활성화
- 지역에 기반한 장애인의 역량 개발 지원 및 장애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b>합 계</b>	<b>100,000</b>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201-03 행사운영비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프로그램 운영(2개 사업)	= 10,000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프로그램 운영(22개 사업)	= 90,000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 :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주관 『2022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 공모 지원
- 2022.03. : 공모사업 선정
- 2022.04.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 2022.05.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 성립전 예산 편성
- 2022.05. ~ 11.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 추진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0년	해당없음	
2021년	○ 2021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 추진 - 운영내용 :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30개 - 참여기관/참여인원수 : 김포장애인야학 등 13개 단체 / 2,067명	
2022년	○ 2022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 추진 - 운영내용 :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24개 - 참여기관/참여인원수 : 김포장애인야학 등 13개 단체 / 360여명	8.12일기준

###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해 당	없 음		
2021년	200,000	194,952	-	5,048	
2022년	50,000	36,000	/	14,000	8.12일 기준 실 집행현황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팀장 김지선	담당자	행정7급 이풍주	전화	5151
-----	--------	------------	-----	----------	----	------

#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P - 123)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11월 ○ 위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체험, 공연, 전시 등 프로그램 운영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평생학습 프로그램 체험 및 기관 정보공유로 평생학습 인식 확산
- 예산요구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예산액 (A)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F=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증감액 (D)	2회 추경 증감액 (E)		
계	40,000	40,000	0	0	40,000	0	
국 비		0				0	
도 비		0				0	
시 비	40,000	40,000	0	0	40,000	0	
기 타		0				0	

## □ 예산 증감사유

- 2022년 하반기 행사성 사업 추경 반영

## □ 법적근거

근거법령	평생교육법	제5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
근거내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21.11월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평생학습박람회를 통해 시민들이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관람하여 학습동기 부여
- 평생교육기관 간에 소통 및 평생학습 성과의 장을 마련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확산에 기여
- 평생학습 저변확대를 위한 학습동아리 육성 및 나아가 직업으로 연계 도모 (학습형 일자리 창출)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b>합 계</b>	<b>40,000</b>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201-03 행사운영비	· 평생학습박람회 행사 운영	= 26,000	
	301-09 행사실비지원금	· 체험분야 부스지원 350,000원 × 40팀	= 14,000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9. : 평생학습 박람회 운영계획 수립
- 2022.10. : 박람회 참가 기관·단체 접수 및 선정
- 2022.11. : 평생학습 박람회 개최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0년	·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 취소	
2021년	· 일 시 : 2021.11.25.(목)~ 26.(금)2일간 *개막식 11.25 14:00~15:20 · 주 제 : 읍면동 가까이배움터에서 내 삶의 락(樂)을 찾다. · 장 소 : 김포아트홀 3층 공연장, 읍면동 가까이배움터 10개소 · 운영방법 : On-Off Line 병행 ※ 유튜브생중계 송출 · 참 여 자 : 20개팀, 1400명 (체험13, 공연4, 영상3) · 주요내용 ① 개막행사 - 유공자시상, 축하공연, 성과보고 및 평생교육 이야기 영상, 미니골든벨, 동아리 공연 등 ② 전시, 체험 - 성인문해 사회작품전시(40점), 프로그램 체험(대면 10개, 온라인 3개)	
2022년	· 11월 평생학습박람회 운영 예정	8.12일기준

###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0	0	0	0	
2021년	40,000	28,553	0	11,447	
2022년	0	0	-	0	8.12일 기준 실 집행현황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팀장 김지선	담당자	임기제행정7급 유승신	전화	5144
-----	--------	------------	-----	-------------	----	------

# (평생학습센터 시설 운영) (P - 124)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연중 ○ 위치 : 양곡로 413 외 8 개소
- 사업규모 : 9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평생교육 시설이 부족한 읍면동 단위에 근거리 학습권 교육환경 지원
- 예산요구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예산액 (A)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F=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증감액 (D)	2회 추경 증감액 (E)		
계	23,869	256,195	234,395	0	21,800	232,326	
국 비		0				0	
도 비		0				0	
시 비	23,869	256,195	234,395	0	21,800	232,326	
기 타		0				0	

## □ 예산 증감사유

- 읍면·동 가까이배움터(평생학습센터) 헬스장 7개소 운영 예산 편성

## □ 법적근거

근거법령	평생교육법/ 김포시평생학습조례	제21조의3 제1항 / 제34조
근거내용	제21조의3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①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읍·면·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4조(설치 및 운영) 시장은 「평생교육법」 제21조의3에 따라 읍·면·동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이하 "평생학습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21.11월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읍면동 가까이배움터(평생학습센터) 7개소 헬스장 운영 시설유지 및 관리
- 시설개선을 통해 수강생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b>합 계</b>	<b>21,800</b>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 헬스장 시설 운영비 : 2,000,000원 × 7개소 = · 헬스장 기간제근로자 면접심사비 : 100,000원 × 4명 × 2팀 =	14,000 800	
	201-02 공공운영비	· 헬스기구 보수비 : 1,000,000원 × 7개소 =	7,000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6. ~ 07. : 2022년 헬스장 기간제근로자 채용
- 2022.06. ~ 07. : 헬스장 기구 점검 및 정비
- 2022.08. ~ 12. : 헬스장 7개소 운영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0년	승강기 유지보수비, 무인경비 관리 유지비 등 2개소 시설운영	
2021년	승강기 유지보수비, 무인경비 관리 유지비 등 2개소 시설운영	
2022년	읍면동 가까이배움터 헬스장 7개소 운영 · 운영기간 : 2022. 8. 1.(월) ~ 12. 30.(금) 평일 06:30~21:30 · 운영인력 : 기간제근로자 14명 공개채용 (오전·오후 각1명) · 운영규모 : 읍면동 가까이배움터 7개소, 1,050명 (고촌, 양촌, 대곡, 월곡, 하성, 김포본, 풍무) · 운영점검 : 헬스기계 수리 및 녹제거, 도장작업, 기구 및 천정 등 곰팡이 제거	8.12일기준

###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25,049	22,442	-	2,606	
2021년	23,869	21,729		2,140	
2022년	249,731	24,278		225,453	8.12일 기준 실 집행현황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팀장 김지선	담당자	임기제행정7급 유승신 임기제마급 이지은	전화	5144 5149
-----	--------	------------	-----	--------------------------	----	--------------

## (평생학습관 시설 운영) (P - 124)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10월 ~ 11월   ○ 위치 : 김포시 사우중로3번길 13-17
- 사업규모 : 평생학습관 및 대강당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평생학습관 노후 시설 및 유지보수를 통한 시설 개선으로 편의성 제고
- 예산요구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예산액 (A)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F=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증감액 (D)	2회 추경 증감액 (E)		
<b>계</b>	260,812	250,230	228,230	0	22,000	-10,582	
국 비		0				0	
도 비		0				0	
시 비	260,812	250,230	228,230	0	22,000	-10,582	
기 타		0				0	

### □ 예산 증감사유

- 평생학습관 노후시설 방수 공사에 따른 예산 반영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김포시 평생학습 조례	제13조
근거내용	제13조(설치 및 운영) 시장은 「평생교육법」 제21조에 따라 시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 학습 기회의 제공을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21.11월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노후된 시설의 방수 공사를 통한 누수 방지 및 안전한 환경 조성
  - 대상 : 대강당 옥상 및 1층 계단 / 평생학습관 5층 옥상
  - 면적 : 약 486㎡
  - 내용 : 방수 파손 부분 보수 및 해당 구역 방수 공사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2,000	
평생학습관 시설 운영	401-01 시설비	· 평생학습관 방수 공사 - 대강당 : 45,260원 × 340.2㎡ = 15,400,000원 - 평생학습관 : 45,260원 × 145.8㎡ = 6,600,000원	= 22,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9. ~ 12. : 평생학습관 노후시설 방수 공사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0년	· 평생학습관 운영 공공요금(전기,도시가스, 상하수도요금등) 납부 · 평생학습관 운영 유지보수 용역(전기안전관리,소방시설관리,무인경비등) 실시 · 평생학습관 운영 및 장치 유지관리 · 평생학습관 청사 청소 및 경비 용역(청소 및 경비 안내) 실시	
2021년	· 평생학습관 운영 공공요금(전기,도시가스, 상하수도요금등) 납부 · 평생학습관 운영 유지보수 용역(전기안전관리,소방시설관리,무인경비등) 실시 · 평생학습관 운영 및 장치 유지관리 · 평생학습관 청사 청소 및 경비 용역(청소 및 경비 안내) 실시	
2022년	· 평생학습관 운영 공공요금(전기,도시가스, 상하수도요금등) 납부 · 평생학습관 운영 유지보수 용역(전기안전관리,소방시설관리,무인경비등) 실시 · 평생학습관 운영 및 장치 유지관리	8.12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284,632	218,993	-	65,639	
2021년	260,812	203,869	-	56,943	
2022년	228,230	123,333	-	104,897	8.12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육청소년과	평생교육운영팀장 김유재	담당자	공업8급 박정세	전화	5142
-----	--------	--------------	-----	----------	----	------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

**노인장애인과**



# (기초연금 지급) (P - 126)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위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약 41,000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 노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도모
- 예산요구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예산액 (A)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F=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증감액 (D)	2회 추경 증감액 (E)		
계	119,525,160	121,788,839	125,303,617	-11,160,733	7,645,955	2,263,679	
국 비	83,696,841	85,252,187	87,712,532	-7,812,513	5,352,168	1,555,346	
도 비	7,154,224	7,307,331	7,518,217	-669,644	458,758	153,107	
시 비	28,674,095	29,229,321	30,072,868	-2,678,576	1,835,029	555,226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기초연금법	제4조제1항
근거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연금이 제1조의 목적에 따라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 하는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근거법령	기초연금법	제25조제2항
근거내용	제1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뺀 비용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구가 상호 분담한다. 이 경우, 그 부담비율은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시·도의 조례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21.11월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연금 지급으로 생계 보조
-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증진 도모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기초연금 지급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변경내시에 따른 국·도비 증액 · 경정(121,788,839,000원) - 기정(114,142,884,000원)	= 7,645,955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9. : 국·도비 예산 증액 상시 요구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0년	· 기초연금 수급 대상가구 월 평균 33,144명에게 총 99,631,200천원 지급	
2021년	· 기초연금 수급 대상가구 월 평균 36,804명에게 총 118,779,259천원 지급	
2022년	· 기초연금 수급 대상가구 월 평균 39,276에게 총 75,760,076천원 지급	8.12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100,244,000	99,631,200		612,799	
2021년	119,525,160	118,779,259		745,900	
2022년	114,142,884	75,760,076		38,382,808	8.12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 팀장 장윤석	담당자	복지8급 이태혁	전화	2205
-----	--------	-------------	-----	----------	----	------



# (독거노인 후생복지비) (P - 126)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위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관내 기초생활수급 독거노인 2,400명 (2,100명 → 2,400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기초생활수급 독거노인의 후생복지 도모
- 예산요구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예산액 (A)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F=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증감액 (D)	2회 추경 증감액 (E)		
계	427,040	489,600	428,400		61,200	62,560	
국 비							
도 비							
시 비	427,040	489,600	428,400		61,200	62,56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수급자 증가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 확보(2,100명 → 2,400명)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김포시 노인복지 증진 기본조례	제4조제1항
근거내용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7. 독거노인 후생복지비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21.11월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증가로 인한 후생복지비 지급대상자 증가
- 기초생활수급 독거노인의 신체적 청결 유지를 위한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으로 노인 삶의 질 향상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독거노인 후생복지비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후생복지비 · 경정 (489,600,000원) - 기정 (428,400,000원) =	61,200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 ~ 12. : 매월 20일 지급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0년	· 관내 기초생활수급 독거노인 월평균 1,723명에게 후생복지비 총 359,108천원 지원	
2021년	· 관내 기초생활수급 독거노인 월평균 2,013명에게 후생복지비 총 423,453천원 지원	
2022년	· 관내 기초생활수급 독거노인 월평균 2,224명에게 후생복지비 총 269,212천원 지원	8.12일기준

###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359,550	359,108		442	
2021년	427,040	423,742		3,298	
2022년	428,400	269,212		159,188	8.12일 기준 실 집행현황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장 장윤석	담당자	행정8급 장연희	전화	2207
-----	--------	------------	-----	----------	----	------

#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P - 126)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위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A, B판정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25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보행기 구입 비용 경감으로 이동편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 예산요구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예산액 (A)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F=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증감액 (D)	2회 추경 증감액 (E)		
계	2,000	5,000	2,000		3,000	3,000	
국 비							
도 비							
시 비	2,000	5,000	2,000		3,000	3,00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신청자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 (10명 → 25명)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김포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제5조
근거내용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노인들에게 성인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21.11월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관내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 복지용구 미수혜자인 노인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들에게 보행기 구입비용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 경정 (200,000원*25명) - 기정 (200,000원*10명)	= 3,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 ~ 2022.12. : 지원대상자 결정 및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0년	· 노인 성인용 보행기 총 31명 지원	
2021년	· 노인 성인용 보행기 총 11명 지원	
2022년	· 노인 성인용 보행기 총 10명 지원	8.12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10,000	4,823		5,177	
2021년	2,000	1,950		50	
2022년	2,000	1,960		40	8.12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장 장윤석	담당자	행정9급 공태윤	전화	2206
-----	--------	------------	-----	----------	----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지원) (P - 126)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위 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종사자 51명(전담사회복지사 4명, 생활지원사 47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일상생활이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기존의 서비스를 통합하여 욕구와 필요에 따라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예산액 (A)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F=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증감액 (D)	2회 추경 증감액 (E)		
계	1,004,510	1,003,216	993,690		9,526	-1,294	
국 비	703,150	702,268	695,600		6,668	-882	
도 비	45,204	45,139	44,710		429	-65	
시 비	256,156	255,809	253,380		2,429	-347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

## □ 법적근거

근거법령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제2항
근거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21.11월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종사자 51명에 처우개선을 위한 교통비 지원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사업 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교통비 지원 · 경정(1,003,216,000원) - 기정(993,690,000원)	= 9,526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12. : 사업 정산보고 및 2022년 사업계획 수립
- 2022.01. : 2022년 사업 시행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0년	· 수행기관 2개소(김포시노인종합복지관, 김포시북부노인복지관) · 수행인력 50명(전담사회복지사 4명, 생활지원사 46명) · 돌봄서비스 지원대상자 544명(12월 기준)	
2021년	· 수행기관 2개소(김포시노인종합복지관, 김포시북부노인복지관) · 수행인력 54명(전담사회복지사 4명, 생활지원사 50명) · 돌봄서비스 지원대상자 553명(12월 기준)	
2022년	· 수행기관 2개소(김포시노인종합복지관, 김포시북부노인복지관) · 수행인력 51명(전담사회복지사 4명, 생활지원사 47명) · 돌봄서비스 지원대상자 525명	8.12일기준

###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1,143,730	1,143,436		294	
2021년	1,004,510	1,004,510		0	
2022년	993,690	773,162		220,528	8.12일 기준 실 집행현황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장 장윤석	담당자	복지6급 이에스더	전화	2204
-----	--------	------------	-----	-----------	----	------

# (노인교실 지원) (P - 127)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3. ~ 12.
- 공모여부 : 비공모(대한노인회 부설 김포노인대학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근거하여 비공모, 그 외 노인교실은 공모)
- 보조사업자 : 김포노인대학 외 5개소 대표자 : 유필선 외 5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노인여가 함양 및 노인복지 증진 기여
- 예산요구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예산액 (A)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F=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증감액 (D)	2회 추경 증감액 (E)		
<b>계</b>	<b>58,055</b>	<b>188,176</b>	<b>248,992</b>		<b>-60,816</b>	<b>130,121</b>	
국 비							
도 비							
시 비	58,055	188,176	248,992		-60,816	130,121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노인교실 운영지원을 위해 모집 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응모자가 없어 감액

## □ 법적근거

근거법령	노인복지법	제47조
근거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21.11월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관내 노인교실은 여가·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노인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노인들에게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등 노인여가 함양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노인교실 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 노인교실(공모) 지원 · 경정(188,176,000원) - 기정(248,992,000원)	= -60,816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0년	· 보조사업자 : 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 부설 김포노인대학 · 추진실적 :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노인교실 운영중단으로 202,873천원 감액(제3회 추경) - 집행예정액 7,200천원을 제외한 38,883천원 추가 반납조치	
2021년	· 보조사업자 : 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 부설 김포노인대학 · 추진실적 :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노인교실 운영중단으로 190,901천원 감액(제3회 추경)	
2022년	· 보조사업자 : 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 부설 김포노인대학 · 추진실적 : 김포노인대학 1개소, 188,176천원 지원	8.12일기준

###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46,083	4,840		41,243	
2021년	58,055	42,850		15,205	
2022년	248,992	188,176		60,816	8.12일 기준 실 집행현황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 팀장 장윤석	담당자	복지8급 이태혁	전화	2205
-----	--------	-------------	-----	----------	----	------



# (노인행사 등 지원) (P - 127)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9. ~ 11. ○ 위 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참여인원 1,000여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노인 등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를 개최하여 노인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노인 복지에 대한 시민 참여와 화합을 통하여 경로효친 함양

##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예산액 (A)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F=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증감액 (D)	2회 추경 증감액 (E)		
<b>계</b>	<b>111,800</b>	<b>118,800</b>	<b>20,800</b>		<b>98,000</b>	<b>7,000</b>	
국 비							
도 비							
시 비	111,800	118,800	20,800		98,000	7,00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노인행사 개최에 따른 예산 확보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김포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	제4조제11항제3호
근거내용	제2조제2호의 자에 대하여는 노인의 날 행사에 참여하는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물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예정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22.11월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노인의 날 행사를 위한 14개 읍면동 분회 물품구입 및 참여 노인 급식비 지원
- 노인들에게 자긍심 향상과 노인복지에 대한 시민 참여와 화합을 통하여 경로효친 함양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공 통		총계	98,000	
노인의 날 행사	201-03 행사운영비	· 2,000,000원*14개 읍·면·동	= 28,000	
노인의 날 행사 급양비	301-09 행사실비지원금	· 5,000,000원*14개 읍·면·동	= 70,000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7. ~ 08. : 2022년 노인의 날 행사 개최 기본 계획 수립
- 2022.09. : 노인복지 유공 표창 확정 및 행사 준비를 위한 읍면동(14개)자금 재배정
- 2022.10. : 노인의 날 행사 개최 예정 및 사업비 정산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0년	· 개최일시 : 2020.11.27. · 개최장소 : 김포시민회관 실내체육관 · 참여인원 : 150명 · 행사내용 : 기념식, 유공자 표창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사축소
2021년	· 개최일시 : 2021.11.27. · 개최장소 : 김포시 평생학습관 · 참여인원 : 200여명 · 행사내용 : 기념식, 유공자 표창, 등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사축소
2022년	· 개최일시 : 2022.6.8. · 개최장소 : 김포시민회관 실내체육관 · 참여인원 : 700여명 · 행사내용 : 체육행사, 유공자 표창 등	8.12일 기준

###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28,000	26,000		2,000	
2021년	111,800	27,988		83,812	
2022년	20,800	4,800		16,000	8.12일 기준 실 집행현황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 팀장 장윤석	담당자	복지8급 이태혁	전화	2205
-----	--------	-------------	-----	----------	----	------

# (제3종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P - 127)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3. ~ 12.
- 위치 : 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김포어린이집 및 노인회사무실)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공유재산 시설물 중 제3종시설물로 지정 등록된 (사)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의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을 통해 노인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예산액 (A)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F=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증감액 (D)	2회 추경 증감액 (E)		
계	2,600	0	2,600		-2,600	-2,600	
국 비							
도 비							
시 비	2,600	0	2,600		-2,600	-2,60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 제3종시설물 해제로 인한 안전점검 미실시로 예산 삭감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2항
근거내용	제3종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근거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 제2항
근거내용	①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동일한 시설물의 각 부분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시설물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말한다)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 안전점검의 경우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21.11월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 건물 안전 등급이 B등급으로 지정됨에 따라 제3종시설 등록을 해제 하여 안전관리비 감액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제3종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201-01 사무관리비	- 정기안전점검비 · 경정 (0원) - 기정 (2,600,000원)	= -2,600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0년	· 제3종시설물(김포어린이집 및 노인회 사무실) 정기안전 점검(상하반기)	
2021년	· 제3종시설물(김포어린이집 및 노인회 사무실) 정기안전 점검(상하반기)	
2022년	· 제3종시설물(김포어린이집 및 노인회 사무실) 지정 해제	8.12일기준

###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3,600	2,600		1,000	
2021년	2,600	2,600		0	
2022년	2,600	0		2,600	8.12일 기준 실 집행현황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 팀장 장윤석	담당자	복지8급 이태혁	전화	2205
-----	--------	-------------	-----	----------	----	------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 (P - 127)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위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경로당 360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경로당 냉난방비 등 운영비 지원을 통한 노인여가복지 증진
- 예산요구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예산액 (A)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F=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증감액 (D)	2회 추경 증감액 (E)		
계	842,978	902,687	722,687		180,000	59,709	
국 비	210,744	451,343	361,344		89,999	240,599	
도 비	189,670	135,403	108,403		27,000	-54,267	
시 비	442,564	315,941	252,940		63,001	-126,623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냉난방비 물가인상률 반영에 따른 국도비 내시 금액 조정
- 경로당 신규 설치에 따른 경로당 수 증가

## □ 법적근거

근거법령	노인복지법	제37조의2제1항, 제2항
근거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 관리양곡을 포함한다)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21.11월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편안한 경로당 이용 환경조성을 위한 필수적인 보조금으로 물가를 반영한 추가지원이 필요함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 (경정)890,087,000원 - (기정)710,087,000원	= 180,000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 : 상반기 난방비 지급
- 2022.04. ~ 09. : 양곡비 지급 (2/3/4분기)
- 2022.07. : 냉방비 지급
- 2022.11. : 하반기 난방비 지급
- 2023.01. ~ 02. : 보조금 집행 정산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0년	· 경로당 346개소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2021년	· 경로당 348개소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2022년	· 경로당 357개소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8.12일기준

###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802,333	754,039		48,294	
2021년	842,978	834,123		8,855	
2022년	722,687	498,720		223,967	8.12일 기준 실 집행현황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장 장윤석	담당자	행정7급 이민옥	전화	2249
-----	--------	------------	-----	----------	----	------

# (경로당 입식좌석 개선) (P - 127)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위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경로당 48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입식좌석 지원을 통한 편리한 경로당 이용환경 조성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예산액 (A)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F=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증감액 (D)	2회 추경 증감액 (E)		
<b>계</b>	<b>200,000</b>	<b>36,000</b>	<b>48,000</b>		<b>-12,000</b>	<b>-164,000</b>	
국 비							
도 비							
시 비	200,000	36,000	48,000		-12,000	-164,00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신규 설치 경로당 대부분 입식 좌석이 기설치되어 경로당 환경개선 예산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함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김포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제3조제1항
근거내용	시장은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21.11월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관절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편리한 경로당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임
- 최근 설치되는 경로당의 경우 입식좌석이 기설치된 경우가 많아 예산 감액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경로당 입식좌석 개선	402-01 민간자본사업 보조(자체재원)	- 경로당 입식좌석 개선 · (경정)1,000,000원*36개소 - (기정)1,000,000원*48개소	= -12,000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2. : 2022년도 경로당 입식좌석 지원 계획 수립
- 2022.04. : 28개소 입식좌석 보조금 지급
- 2022.06. : 8개소 입식좌석 보조금 지급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0년	· 경로당 100개소 입식좌석 지원	
2021년	· 경로당 200개소 입식좌석 지원	
2022년	· 경로당 35개소 입식좌석 지원	8.12일기준

###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100,000	100,000		0	
2021년	200,000	199,889		111	
2022년	48,000	35,000		13,000	8.12일 기준 실 집행현황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장 장윤석	담당자	행정7급 이민옥	전화	5476
-----	--------	------------	-----	----------	----	------



# (경로당 환경개선) (P - 127)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위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경로당 360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노후 경로당 개보수 및 물품 지원으로 편안한 경로당 이용환경 조성
- 예산요구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예산액 (A)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F=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증감액 (D)	2회 추경 증감액 (E)		
<b>계</b>	80,000	92,000	80,000		12,000	12,000	
국 비							
도 비							
시 비	80,000	92,000	80,000		12,000	12,00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경로당 시설 노후로 인한 불편 상황 발생하여 입식좌석 개선 보조금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환경개선 보조금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함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김포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제3조제1항
근거내용	시장은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21.11월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노후 경로당 시설보수 및 물품 지원을 통해 노인여가복지 향상에 기여
- 설치한지 오래된 경로당이 많아 시설보수 및 물품 지원이 지속적으로 요구됨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경로당 환경개선	402-01 민간자본사업 보조(자체재원)	- 경로당 환경개선 · (경정)92,000,000원 - (기정)80,000,000원	= 12,000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 시설보수 참여 경로당 모집 공고
- 2022.02. 경로당 환경개선 신청서 접수
- 2022.03. 심사 및 대상자 선정
- 2022.04. 보조금 교부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0년	· 경로당 73개소 물품 지원, 18개소 시설보수	
2021년	· 경로당 63개소 물품 지원, 27개소 시설보수	
2022년	· 경로당 21개소 물품지원, 16개소 시설보수	8.12일기준

###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91,300	90,863		437	
2021년	80,000	79,206		794	
2022년	80,000	79,596		404	8.12일 기준 실 집행현황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장 장윤석	담당자	행정7급 이민옥	전화	5476
-----	--------	------------	-----	----------	----	------

# (시니어클럽 운영(자체))(신규) (P - 128)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10. ~ 2022.12. ○ 위치 : 사우중로74번길 48
- 사업규모 : 김포시니어클럽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노인일자리 전담 지원기관인 시니어클럽의 운영을 지원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활성화 도모

##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예산액 (A)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F=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증감액 (D)	2회 추경 증감액 (E)		
<b>계</b>		<b>120,000</b>			<b>120,000</b>		
국 비							
도 비							
시 비		120,000			120,00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시니어클럽 사무실 이전에 따른 이전 비용 지원

## □ 법적근거

근거법령	노인복지법	제23조
근거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지역 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예정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22.11월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지역자원을 활용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전담하여 노인적합형 일자리 개발 및 보급
- 시니어클럽 사무실 이전 및 임대차 비용을 지원하여 사업 안정화 도모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시니어클럽 운영(자체)	307-05 민간위탁금	- 보증금 및 임차료 등	= 120,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9. : 사무실 임대차계약 체결
- 2022.11. : 사무실 이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장 장윤석	담당자	행정9급 공태운	전화	2206
-----	--------	------------	-----	----------	----	------

# (노인복지관 운영비(자체)) (P - 128)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위 치 : 사우중로 74번길 48(사우동) / 통진읍 마송1로 16번길 40-2
- 사업규모 : 노인복지관 2개소(김포시노인종합복지관, 김포시북부노인복지관)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노인복지관 운영을 통하여 노인들의 여가, 건강, 일자리, 자원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

##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예산액 (A)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F=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증감액 (D)	2회 추경 증감액 (E)		
계	1,836,087	2,091,427	2,152,254	20,471	-81,298	255,340	
국 비							
도 비							
시 비	1,836,087	2,091,427	2,152,254	20,471	-81,298	255,34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복지관 시설공사 및 물품구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예산과목 변경
  -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 민간위탁금, 민간위탁사업비
- 김포시노인종합복지관 천장 교체공사 및 화장실 냉난방기 설치공사의 시급성이 낮아 예산 삭감

## □ 법적근거

근거법령	노인복지법	제47조
근거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동의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21.11월	-	-	-	-	2021.10월 (노인종합복지관) 2022. 1월 (북부노인복지관)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해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교부하고자 함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2회추경 요구액	비고
노인복지관 운영비(자체)		○ 총 계	= -81,298	
	401-01 시설비	- 김포시노인종합복지관 시설보강 · 경정(0원) - 기정(116,900원)	= -116,900	· 시설비⇒ 민간위탁금 (시설장비유지비)
		○ 소 계	= -24,661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 김포시노인종합복지관 비품 구입 · 경정(0원) - 기정(22,594,000원) - 김포시북부노인복지관 비품 구입 · 경정(0원) - 기정(2,067,000원)	= -22,594 = = -2,067	· 자산및물품취득비 ⇒ 민간위탁사업비
		○ 소 계	= 37,669	
	307-05 민간위탁금	- 김포시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지원 · 경정(1,302,035,000원) - 기정(1,272,935,000원) - 김포시북부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 경정(766,798,000원) - 기정(758,229,000원)	= 29,100 = = 8,569	
402-03 민간위탁사업비	- 김포시노인종합복지관 비품 구입 · 냉장고, 음향 장비 등 구입비	= 22,594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계획수립, 사업추진절차 및 내용 자세히 작성)

- 2022.01. ~ 12. : 분기별 보조금 교부 및 정산
- 2022.02. : 노인종합복지관 재계약(계약갱신)
- 2022.04. : 북부노인복지관 재위탁
- 2022.10. : 노인복지관 보조금 집행 및 운영실태 점검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0년	· 노인복지관 운영비(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지원(1,371,157천원) · 노인복지관 비품구입(28,134천원)	
2021년	· 노인복지관 운영비(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지원(1,512,108천원) · 노인복지관 비품구입(15,302천원)	
2022년	· 노인복지관 운영비(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지원(2,010,693천원)	8.12일기준

###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1,661,650	1,399,291		262,359	
2021년	1,851,637	1,527,409		324,228	
2022년	2,172,725	2,010,693		162,032	8.12일 기준 실 집행현황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장 장윤석	담당자	행정7급 이민옥	전화	5476
-----	--------	------------	-----	----------	----	------

#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P - 129)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위 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422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급여 지원을 받는 수급권자의 의료수가를 지원(대납)하여 원활한 재가급여 제공(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

##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예산액 (A)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F=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증감액 (D)	2회 추경 증감액 (E)		
계	4,988,000	6,412,228	5,803,467		608,761	1,424,228	
국 비							
도 비	498,800	641,223	580,347		60,876	142,423	
시 비	4,489,200	5,771,005	5,223,120		547,885	1,281,805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지급대상자 증가(380명 → 422명)에 따른 변경 내시{경기도 노인복지과-15231(2022.07.05.)호} 통보

## □ 법적근거

근거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제2항
근거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제40조 제1항 단서 및 제3항제1호에 따라 면제 및 감경됨으로 인하여 공단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및 관리 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21.11월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자택 등에 거주하며 불편을 겪고 있으나 시설 입소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재가 방문 또는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신체활동, 가사지원 등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노후의 생활 안정과 부담 경감을 도모함.

-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부담금,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조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 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 및 관리 운영비의 전액에 대한 부담금 지출(도비10%, 시비90%)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1,207,859원* (422명-380명)*12월 =	608,761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 : 1분기 재가급여 집행
  - 2022.04. : 2분기 재가급여 집행
  - 2022.06. :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통보
  - 2022.07. ~ 2022.12. : 사업비 집행(분기) 및 정산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0년	· 1분기 : 937,459천원 · 2분기 : 919,714천원 · 3분기 : 937,459천원 · 4분기 : 846,919천원	
2021년	· 1분기 : 1,242,047천원 · 2분기 : 1,227,402천원 · 3분기 : 1,247,000천원 · 4분기 : 1,271,551천원	
2022년	· 1분기 : 1,610,541천원 · 2분기 : 1,590,573천원 · 3분기 : 1,605,557천원	8.12일기준

###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3,641,251	3,641,251			
2021년	4,988,000	4,988,000			
2022년	5,803,467	4,806,671		996,796	8.12일 기준 실 집행현황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노인시설팀장 정진우	담당자	복지8급 이미영	전화	5560
-----	--------	------------	-----	----------	----	------



#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P - 129)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위 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310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급여 지원을 받는 수급권자들의 의료수가를 지원(대납)하여 원활한 시설급여(요양시설 입소비용 지원 복지서비스)제공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예산액 (A)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F=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증감액 (D)	2회 추경 증감액 (E)		
계	5,854,000	8,015,982	7,778,830		237,152	2,161,982	
국 비							
도 비	2,927,000	4,007,991	3,889,415		118,576	1,080,991	
시 비	2,927,000	4,007,991	3,889,415		118,576	1,080,991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지급대상자 증가(300명 → 310명)에 따른 변경 내시{경기도 노인복지과-15231(2022.07.05.)호} 통보

## □ 법적근거

근거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제2항
근거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제40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제1호에 따라 면제 및 감경됨으로 인하여 공단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21.11월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자택 등에 거주가 불가능하여 요양시설에 입소한 관내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노인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생활 안정과 가족 생계의 부담 경감을 도모

-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조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사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해야할 비용 및 관리 운영비의 전액에 대한 부담금 지출(도비50%,사비50%)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1,976,267원*(310명-300명)*12월	≒ 237,152	

**□ 사업 추진계획 (시설비 등 투자사업 외)**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 : 1분기 시설급여 집행
- 2022.04. : 2분기 시설급여 집행
- 2022.06. :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통보
- 2022.07. ~ 2022.12. : 사업비 집행(분기)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0년	· 1분기 : 1,157,661천원 · 2분기 : 1,135,748천원 · 3분기 : 1,157,661천원 · 4분기 : 1,268,964천원	
2021년	· 1분기 : 1,457,687천원 · 2분기 : 1,430,688천원 · 3분기 : 1,453,532천원 · 4분기 : 1,472,221천원	
2022년	· 1분기 : 1,913,449천원 · 2분기 : 1,889,629천원 · 3분기 : 2,106,453천원	8.12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4,720,034	4,720,034		0	
2021년	5,814,128	5,814,128		0	
2022년	7,778,830	5,909,531		1,869,299	8.12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노인시설팀장 정진우	담당자	복지8급 이미영	전화	5560
-----	--------	------------	-----	----------	----	------

#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노인시설)) (P - 129)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7. ~ 12. ○ 위치 : 관내 노인시설
- 사업규모 : 노인의료복지시설 50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 제고
- 예산요구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예산액 (A)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F=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증감액 (D)	2회 추경 증감액 (E)		
계		64,000			64,000	64,000	
국 비		64,000			64,000	64,000	성립전
도 비							
시 비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관내 노인시설수급자(기초생계기초의료)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비 내시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규-2553(2022.05.31.)호, 경기도 복지사업규-9132(2022.06.03.)호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사회보장기본법	제24조제1항
근거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 하에서도 모든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미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에 직면한 노인 시설수급자(기초생계기초의료)에게 지원금 지급
- 시설수급자의 생계비 지원에 맞는 사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금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 노인시설 긴급생활지원금 : 200,000원*320명 (※ 대상시설수 : 50개소)	= 64,000	

□ 사업 추진계획 (시설비 등 투자사업 외)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6. :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 통보
- 2022.06. : 성립전예산
- 2022.07. ~ 2022.08. : 보조금 지급
- 2022.11. : 지급액 정산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노인시설팀장 정진우	담당자	복지8급 이미영	전화	5560
-----	--------	------------	-----	----------	----	------

#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신규) (P - 129)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2022. 12.
- 위치 : 김포시 관내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국민권익위원회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의혹 신고자에게 지급한 보상금 상환
- 예산요구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예산액 (A)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F=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증감액 (D)	2회 추경 증감액 (E)		
계		1,000			1,000	1,000	
국 비							
도 비							
시 비		1,000			1,000	1,00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 발생에 따른 소요예산 확보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제6항
근거내용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보상금 지급 신청인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및 그에 관한 법률관계의 확정을 이유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근거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제2항
근거내용	위원회로부터 제26조제6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결정을 통지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회가 보상금 지급 신청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예정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22.11월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의혹에 대한 접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체 조사 또는 지자체 이첩 조사 결과에 따라 환수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로 인하여 지자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는 경우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 지자체는 권익위가 통지한 기한 내 보상금 상당액을 국고로 상환해야 함.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	301-12 기타 보상금 등	·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 : 200,000원 * 5건	= 1,000	

□ 사업 추진계획 (시설비 등 투자사업 외)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6.27. : 국민권익위 보상금 지급 결정(의안번호 제2022-481호)
- 2022.07.14. :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 통지(의안번호 제2022-481호)
- 2022.05. ~ 12. : 2회 추경 예산편성 및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의안번호 제2022-481호)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노인시설팀장 정진우	담당자	복지8급 이미영	전화	5560
-----	--------	------------	-----	----------	----	------

# (화장장려금 지원) (P - 129)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위치 : 관 내
- 사업규모 : 1,472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관내에 화장시설이 없어 높은 사용료를 내고 타 시군구 소재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해소 및 친환경 장례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화장시설 이용료의 일부 지원

## ○ 예산요구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예산액 (A)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F=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증감액 (D)	2회 추경 증감액 (E)		
계	580,000	736,000	636,000		100,000	156,000	
국 비							
도 비							
시 비	580,000	736,000	636,000		100,000	156,00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장례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인한 화장 수요 증가, 코로나19 등의 영향(화장비용 지원 확대 등)
- 2022년 화장장려금 지원대상 확대(화장비용 실부담자, 임신 4개월 이후 죽은 태아 포함) 및 지원 제도 정착에 따른 수요증가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김포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제4조
근거내용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1구당 50만 원을 화장시설 이용금액으로 지급한다. 단, 화장시설 이용 금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실비를 지급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21.11월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등을 장려하고 주민들의 화장 수요를 충족하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 김포시 관내 화장시설이 없어 타 시·군 화장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 바, 관외 화장시설 이용시 높은 이용료 적용으로 금액 부담이 큰 시민들에게 화장장려금을 지원하여 화장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 2022년 화장지원금 확대 및 지원제도 정착에 따른 수요증가를 대비하여 화장률을 상향 추계함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화장장려금 지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 화장장려금 지원 : (경정)500,000원*1,472명 - (기정)500,000원*1,272명 = ※ (경정)1,472명 = 736명(22년 1~6월 화장장려금 누 신청자수)*2	100,000	경정액 : 736백만원 기정액 : 636백만원 증 감 : 100백만원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4.10.31. : 김포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제정(2015. 1. 1. 시행)
- 2018.01.01. : 김포시 화장장려금 지급 시행
- 2019.06.26. : 김포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지원대상자 확대, 2020.1.1. 시행)
- 2022.02.11. : 김포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지원대상자 확대)
- 2022.01. ~ 2022.12. : 2022년도 화장장려금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0년	· 예산액 : 570,000천원, 신청건수 : 1,117건, 집행액 : 544,980천원, 집행률 : 95%	
2021년	· 예산액 : 580,000천원, 신청건수 : 1,154건, 집행액 : 563,362천원, 집행률 : 97%	
2022년	· 예산액 : 636,000천원, 신청건수 : 838건, 집행액 : 412,060천원, 집행률 : 65%	8.12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570,000	544,980		25,020	
2021년	580,000	563,362		16,638	
2022년	636,000	412,060		223,940	8.12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노인시설팀장 정진우	담당자	시설8급 손창범	전화	2215
-----	--------	------------	-----	----------	----	------



#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P - 130)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위 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장례지원비 및 전파방지비용 지급 대상자 총 77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코로나바이러스로 사망한 자의 유족이 감염병예방법, 장례관리지침 등에 따라 장례했을 경우 장례비 및 전파방지비용을 지원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예산액 (A)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F=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증감액 (D)	2회 추경 증감액 (E)		
계	334,030	332,873		51,177	281,696	-1,157	
국 비	334,030	332,873		51,177	281,696	-1,157	성립전
도 비							
시 비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편성
- 성립전 예산 편성을 통한 집행내역 반영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1항
근거내용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환자등이 사망한 경우(사망 후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된 사람을 포함한다)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시신의 장사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제5의2호
근거내용	제20조의2에 따라 시신의 장사를 치르는데 드는 경비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21.11월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격리기간 내에 사망한 자의 유족이 감염병예방법, 장례 관리지침 등에 따라 장례를 치른 경우, 전파방지 조치비용 및 장례비를 지원
- 코로나19로 사망한 자의 시신을 방역 조치를 함으로써 감염병 확산 방지 효과 및 장례 비용 지원으로 유족들의 부담 경감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합 계	281,696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장례지원비 : 220,000,000원(22명) = 220,000 - 전파방지비용 : 61,696,000원(55명) = 61,696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3. : [1차]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지급
- 2022.04. : [2차]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성립전 예산편성 지급
- 2022.06. : [3차]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성립전 예산편성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0년	·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11,715천원 지급	
2021년	·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1,285천원 지급 (1회추경) ·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114,457천원 지급 (2회추경) ·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39,391천원 지급 (3회추경) ·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50,703천원 지급 (4회추경) ·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128,194천원 지급(간주처리예산)	
2022년	·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332,873천원 지급	8.12일 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11,715	11,715		0	
2021년	334,030	334,029		1	
2022년	332,873	332,873		0	8.12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노인시설팀장 정진우	담당자	복지7급 오규환	전화	2630
-----	--------	------------	-----	----------	----	------

# (장애인단체 지원 (장애인단체연합회 운영지원)) (P - 130)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위 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사)김포시장장애인단체연합회 등 11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장애인단체에 운영비, 사무원 인건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장애 특성에 따른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 제공하여 복지증진 도모
- 예산요구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예산액 (A)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F=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증감액 (D)	2회 추경 증감액 (E)		
계	319,571	349,086	360,065		-10,979	29,515	
국 비							
도 비							
시 비	319,571	349,086	360,065		-10,979	29,515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사)농아인협회 김포시지회 사무원(1인) 퇴사에 따른 인건비 미지급분(5개월 분) 감액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63조제2항
근거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21.11월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사)농아인협회 김포시지회 사무원 퇴사(22.11월 말)후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감액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장애인 단체 연합회 운영지원	307-03 민간단체법정 운영비보조	· 경정 (349,086,000원) - 기정 (360,065,000원)	= -10,979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31. : (사)농아인협회 사무원 퇴사
- 2022.07. ~ : (사)농아인협회 사무원 채용 진행중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0년	· 추진실적 : 장애인단체 11개소 운영비 및 사무원 11명 인건비 등 지원/ 313,905천원	
2021년	· 추진실적 : 장애인단체 11개소 운영비 및 사무원 11명 인건비 등 지원/ 316,546천원	
2022년	· 추진실적 : 장애인단체 11개소 운영비 및 사무원 10명 인건비 등 지원/ 180,353천원	8.12일기준

###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316,000	313,905		2,095	
2021년	319,571	316,546		3,025	
2022년	360,065	180,353		179,712	8.12일 기준 실 집행현황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장 주세자	담당자	복지6급 한은진	전화	2629
-----	--------	-------------	-----	----------	----	------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추가지원)(신규) (P - 130)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위 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2채(남성주택 1, 여성주택 1)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자립을 준비하는 중증장애인의 일반 주거생활 적응을 위해 자립생활주택에서 사회참여 활동, 활동보조인 이용 등을 훈련하여 안정적인 자립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 예산요구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예산액 (A)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F=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증감액 (D)	2회 추경 증감액 (E)		
계		9,500			9,500	9,500	
국 비							
도 비							
시 비		9,500			9,500	9,50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김포장애인자립센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의 운영비 부족에 따른 예산증액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54조제1항
근거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type="checkbox"/>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본 <input type="checkbox"/>	반영예정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재원 <input type="checkbox"/>	2022.11월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자립생활주택 사업은 도·시비 매칭(4:6) 사업으로 운영비 부족으로 예산증액 지원 요구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임대료 및 관리비 등 운영비 지원 필요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지원	307-03 민간단체법정 운영비보조	· 경정 (9,500,000원) - 기정 (0원)	= 9,5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8.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비 지원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장 주세자	담당자	복지6급 한은진	전화	2629
-----	--------	-------------	-----	----------	----	------

# (장애인의료비 지원) (P - 130)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2022. 12. ○ 위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230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의료보장  
도모

○ 예산요구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예산액 (A)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F=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증감액 (D)	2회 추경 증감액 (E)		
계	123,127	128,195	103,195		25,000	5,068	
국 비	98,502	102,556	82,556		20,000	4,054	
도 비							
시 비	24,625	25,639	20,639		5,000	1,014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대상자 증가(185명 → 230명)에 따른 예산 증액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근거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비를 부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와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장애 정도에 따라 의료비에 사용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21.11월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의료급여 2종인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의 의료비용 부담 절감을 통해 적절한 의료권을 보장 및 안정적 치료체계를 구축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장애인의료비 지원	308-11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 장애인 의료비 · 경정 (128,195,000원) - 기정 (103,195,000원)	≒ 25,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12. : 사업비 예탁
  - 2022.10.~12. : 차년도 예산 추계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0년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 지급 · 수급인원 394명(의료급여2종 189명,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205명)	
2021년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 지급 · 수급인원 384명(의료급여2종 149명,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235명)	
2022년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 지급 · 수급인원 378명(의료급여2종 155명,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223명)	8.12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200,371	200,371		0	
2021년	123,127	123,127		0	
2022년	103,195	103,195		0	8.12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장 주세자	담당자	복지7급 박세준	전화	2211
-----	--------	-------------	-----	----------	----	------



# (저소득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P - 130)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위 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8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의 보조기기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경감 및 건강 증진 도모
- 예산요구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예산액 (A)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F=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증감액 (D)	2회 추경 증감액 (E)		
계		12,500	6,000		6,500	12,500	
국 비							
도 비		2,500	1,200		1,300	2,500	
시 비		10,000	4,800		5,200	10,00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대상자 증가(4명 → 8명)에 따른 예산 증액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근거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비를 부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와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장애 정도에 따라 의료비에 사용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21.11월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에게 보조기기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이 주체적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는 사회보장서비스로 지속 지원 필요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저소득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경정(1,562,500원*8명) - 기정(1,500,000원*4명) =	6,5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12. : 사업집행
  - 2022.10.~12. : 결과 평가 및 예산 추계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0년	-	
2021년	-	
2022년	· 보조기기 4건(휠체어 런닝머신 1, 수동휠체어형 추진장치 2, 흡인기 1)	8.12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	-		-	
2021년	-	-		-	
2022년	6,000	5,912		88	8.12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장 주세자	담당자	복지7급 박세준	전화	2211
-----	--------	-------------	-----	----------	----	------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P - 131)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위 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13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출산에 따른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예산액 (A)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F=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증감액 (D)	2회 추경 증감액 (E)		
계	7,000	13,000	7,000		6,000	6,000	
국 비	4,900	9,100	4,900		4,200	4,200	
도 비	315	585	315		270	270	
시 비	1,785	3,315	1,785		1,530	1,53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대상자 증가(7명 → 13명)에 따른 예산 증액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7조
근거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초학습과 직업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본 <input type="checkbox"/>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input type="checkbox"/>	보조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2021.11월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비장애 여성과 비교해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여성 장애인의 출산 비용을 지원하여 출산여성 장애인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 완화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경정(1,000,000원*13명) - 기정(1,000,000원*7명) =	6,000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12. : 사업집행(출산비 지급 및 지급현황 모니터링)
- 2022.10.~12. : 차년도 예산 편성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0년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6명 지원	
2021년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6명 지원	
2022년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7명 지원	8.12일기준

###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7,000	6,000		1,000	
2021년	7,000	6,000		1,000	
2022년	7,000	7,000		0	8.12일 기준 실 집행현황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장 주세자	담당자	복지7급 박세준	전화	2211
-----	--------	-------------	-----	----------	----	------

# (경기도 장애인 누림 통장) (P - 131)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9. ~ 2022. 12. ○ 위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35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자산형성 기능이 미흡한 연금, 수당 등 소득보장 정책을 보완하고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 ○ 예산요구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예산액 (A)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F=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증감액 (D)	2회 추경 증감액 (E)		
<b>계</b>		<b>14,000</b>	<b>31,500</b>		<b>-17,500</b>	<b>14,000</b>	
국 비							
도 비		4,200	9,450		-5,250	4,200	
시 비		9,800	22,050		-12,250	9,80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경기도에서 협력은행 선정 지연으로 사업 기간 축소(9개월 → 4개월)에 따른 예산 감액
- 사업 절차 변경[(기존) 대상자 직접 지급 → (변경) 경기도 누림센터 경유 지급에 따른 통계목 변경]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9조제1항
근거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21.11월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만 19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자금, 주거마련비용, 창업, 직업훈련비 등 자립을 위한 자금 확보 필요
- 만 19세부터 만 20세까지 2년간 매월 저금 금액에 대해 1:1 매칭(최대 10만원) 지원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b>총 계</b>	<b>-17,500</b>	
경기도 장애인 누림 통장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100,000원*35명*9월	= -31,500	
	308-11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 100,000원*35명*4월	= 14,000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09.~2022.06. : 경기도에서 사전절차 추진(사회보장제도 협의, 협력은행 선정 공모 등)
- 2022.07.~08. : 사업 홍보 및 대상자 선정
- 2022.09.~12. : 사업비 예탁(경기도 누림센터)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장 주세자	담당자	복지7급 박세준	전화	2211
-----	--------	-------------	-----	----------	----	------

# (도비 장애수당) (P - 131)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2022. 12. ○ 위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736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중증장애인의 안정적 생활유지와 사회참여 도모를 위해 도 자체 수당 지원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예산액 (A)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F=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증감액 (D)	2회 추경 증감액 (E)		
<b>계</b>	<b>357,080</b>	<b>346,000</b>	<b>336,000</b>		<b>10,000</b>	<b>-11,080</b>	
국 비							
도 비	71,416	69,200	67,200		2,000	-2,216	
시 비	285,664	276,800	268,800		8,000	-8,864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대상자 증가(715명 → 736명)에 따른 예산 증액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49조
근거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장애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補填)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21.11월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기초생활수급 중증장애인 대상자 증가에 따라 예산을 증액함으로써 매월 도 자체 수당 (40천원) 지원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도비 장애수당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경정 (346,000,000원) - 기정 (336,000,000원) =	10,000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12. : 사업집행(매월 수당 지급 및 지급현황 모니터링)
- 2022.09.~10. : 차년도 예산 추계 및 수립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0년	· 누적인원 : 7,320명 · 월 평균 : 610명	
2021년	· 누적인원 : 7,951명 · 월 평균 : 662명	
2022년	· 누적인원 : 4,918명 · 월 평균 : 703명	8.12일기준

###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316,800	279,080		20,820	
2021년	357,080	325,370		31,710	
2022년	336,000	198,760		137,240	8.12일 기준 실 집행현황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장 주세자	담당자	복지8급 정병남	전화	2213
-----	--------	-------------	-----	----------	----	------



# (장애인활동지원사 코로나19 돌봄 한시지원 급여) (P - 132)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3. ~ 2022. 12. ○ 위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111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코로나19 감염이 취약한 활동지원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장애인 돌봄 강화

○ 예산요구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예산액 (A)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F=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증감액 (D)	2회 추경 증감액 (E)		
계		40,626			40,626	40,626	
국 비		28,438			28,438	28,438	성립전
도 비		1,828			1,828	1,828	성립전
시 비		10,360			10,360	10,36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2022년 신규사업(성립전 예산 편성)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근거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미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동안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활동지원사에게 인센티브 제공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장애인활동지원사 코로나19 돌봄 한시지원 급여	308-11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 코로나19 돌봄 한시지원 급여 · 48,000원 × 111명 × 7.6일	≒ 40,626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5. : 국도비 자금교부에 따른 성립전 예산 편성
- 2022.06. : 사업비 예탁(국비·도비 성립전 예산)
- 2022.09. : 사업비 예탁(시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장 주세자	담당자	복지7급 박세준	전화	2211
-----	--------	-------------	-----	----------	----	------

#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P - 132)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2022. 12. ○ 위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106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청소년 발달장애인에게는 여가활동, 자립준비 등의 돌봄서비스 제공, 부모에게는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

## ○ 예산요구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예산액 (A)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F=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증감액 (D)	2회 추경 증감액 (E)		
계	562,595	830,010	711,438		118,572	267,415	
국 비	393,816	581,007	498,006		83,001	187,191	
도 비	25,317	37,350	32,015		5,335	12,033	
시 비	143,462	211,653	181,417		30,236	68,191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대상자 증가(91명 → 106명)에 따른 예산 증액

## □ 법적근거

근거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근거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특성과 요구에 따른 돌봄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21.11월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대기자 증가에 따라 예산을 증액함으로써 청소년 발달장애인에게 월 44시간 돌봄 서비스 바우처 지원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308-11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 경정 (830,010,000원) - 기정 (711,438,000원)	= 118,572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9. : 사업비 예탁
- 2022.09.~12. : 대상자 선정 및 바우처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0년	· 제공기관 : 4개소 · 이용자 : 29명	
2021년	· 제공기관 : 6개소 · 이용자 : 84명	
2022년	· 제공기관 : 5개소 · 이용자 : 93명 · 대기자 : 20명	8.12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211,460	211,460		0	
2021년	562,595	562,595		0	
2022년	711,438	569,152		142,286	8.12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장 주세자	담당자	복지8급 정병남	전화	2213
-----	--------	-------------	-----	----------	----	------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P - 132)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위 치 : 가연마을 (월곶면 용강로 37번길 76-25)  
예지원 (월곶면 용강로 377)  
통진프란치스코집 (통진읍 김포대로 2398-68)
- 사업규모 : 3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입소장애인에게 주거, 일상생활, 지역사회생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유지와 보호 및 재활이 제공될 수 있도록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

##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예산액 (A)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F=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증감액 (D)	2회 추경 증감액 (E)		
계	3,973,050	4,282,230	3,963,330		318,900	309,180	
국 비	2,781,135	2,997,561	2,774,331		223,230	216,426	
도 비	178,787	192,701	178,350		14,351	13,914	
시 비	1,013,128	1,091,968	1,010,649		81,319	78,84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증액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81조
근거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21.11월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지원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 종사자 인건비, 관리 운영비 · 경정(4,282,230원) - 기정(3,963,330원)	= 318,9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 7. :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 2022. 8~12.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0년	· 가연마을 등 장애인 거주시설 3개소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2021년	· 가연마을 등 장애인 거주시설 3개소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2022년	· 가연마을 등 장애인 거주시설 3개소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8.12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3,762,358	3,641,779		120,579	
2021년	3,652,471	3,626,134		26,337	
2022년	3,963,330	3,255,853		707,477	8.12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시설팀장 허윤	담당자	복지7급 이하영	전화	2216
-----	--------	------------	-----	----------	----	------

# (사회복무제도 지원(전환)) (P - 132)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1.~12. ○ 위치 : 가연마을 등 59개소
- 사업규모 : 135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사회복지요원의 봉급 등 지원
- 예산요구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예산액 (A)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F=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증감액 (D)	2회 추경 증감액 (E)		
<b>계</b>	<b>1,245,706</b>	<b>979,088</b>	<b>1,303,970</b>		<b>-324,882</b>	<b>-266,618</b>	
국 비	1,245,706					-1,245,706	
도 비							
시 비		979,088	1,303,970		<b>-324,882</b>	979,088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사회복지요원 소집인원 감소(180명→135명)

## □ 법적근거

근거법령	병역법	제31조제5항
근거내용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요원에게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21.11월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요원의 봉급 등 지원
- 입영신청 및 사회복지시설 수요 감소로 실제 소집 인원이 계획 대비 45명 이상 감축되어 감액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사회복무제도 지원	301-08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 봉급, 교통비, 피복비 · 경정 (979,088,000원) - 기정 (1,303,970,000원)	= -324,882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 ~ 2022.12. : 월별 봉급, 교통비, 피복비(신규소집자) 집행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0년	· 사회복무요원 봉급교통비피복비 지원(월평균 149명, 1,056,000,000원)	
2021년	· 사회복무요원 봉급교통비피복비 지원(월평균 123명, 952,000,000원)	
2022년	· 사회복무요원 봉급교통비피복비 지원(월평균 122명, 557,554,690원)	8.12일기준

###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1,230,021	1,055,545		174,476	
2021년	1,113,700	951,610		162,090	
2022년	1,303,970	557,555		746,415	8.12일 기준 실 집행현황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시설팀장 허윤	담당자	복지7급 박환섭	전화	2218
-----	--------	------------	-----	----------	----	------



#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P - 133)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1.~12. ○ 위치 : 가연마을 등 59개소
- 사업규모 : 135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사회복지요원의 종식비 등 지원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예산액 (A)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F=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증감액 (D)	2회 추경 증감액 (E)		
<b>계</b>	<b>256,200</b>	<b>170,593</b>	<b>268,200</b>		<b>-97,607</b>	<b>-85,607</b>	
국 비							
도 비							
시 비	256,200	170,593	268,200		-97,607	-85,607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사회복지요원 소집인원 감소(180명→135명)

## □ 법적근거

근거법령	병역법	제31조제5항
근거내용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요원에게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거법령	병역법	제75조의3
근거내용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은 제75조제4항에 따른 치료비 또는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금의 지급을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21.11월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요원의 종식비 지원, 공무상 질병 치료비 지원
- 입영신청 및 사회복지시설 수요 감소로 실제 소집 인원이 계획 대비 45명 이상 감축되어 감액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301-08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 중식비 · 경정 (170,593,000원) - 기정 (268,200,000원)	≒ -97,607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 ~ 2022.12. : 월별 중식비 집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0년	· 사회복지요원 중식비 지원(월평균 149명, 총 195,000,000원)	
2021년	· 사회복지요원 중식비 지원(월평균 123명, 총 157,000,000원)	
2022년	· 사회복지요원 중식비 지원(월평균 122명, 총 94,454,200원)	8.12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241,560	195,047		46,513	
2021년	256,200	156,519		99,681	
2022년	268,200	94,454		173,746	8.12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시설팀장 허윤	담당자	복지7급 박환섭	전화	2218
-----	--------	------------	-----	----------	----	------

#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장애인시설)) (P - 133)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7. ~ 12.
- 위 치 : 가연마을 (월곶면 용강로 37번길 76-25)  
예지원 (월곶면 용강로 377)  
통진프란치스코집 (통진읍 김포대로 2398-68)
- 사업규모 : 3개소 87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
- 예산요구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예산액 (A)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F=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증감액 (D)		
계		17,400			17,400	
국 비		17,400			17,400	성립전
도 비						
시 비						
기 타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사회보장기본법	제24조제1항
근거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 하에서도 모든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저소득층 생계부담 완화를 위한 긴급생활지원금에 시설수급자도 포함
- 보장시설 수급자는 해당 시설에 보조금 형태로 현금 지급 (1인 20만원)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계	17,400	
저소득층 한시 간급생활지원금 (장애인시설)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 가연마을 38명 * 200,000원 - 예지원 38명 * 200,000원 - 통진프란치꼬집 11명 * 200,000원	= = =	7,600 7,600 2,2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 5. 29 : 22년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추가경정예산 국회 의결
- 2022. 6. : 보조금 확정내시 통보
- 2022. 6. : 성립전예산
- 2022. 7. : 보조금 지급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시설팀장 허윤	담당자	복지7급 이하영	전화	2216
-----	--------	------------	-----	----------	----	------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

**여성가족과**



# (생계급여(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P - 140)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월 ~ 12월 ○ 위치 : 비공개시설
- 사업규모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보호시설 입소 수급자의 숙식을 비롯한 기본적인 생활 지원
- 예산요구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예산액 (A)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F=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증감액 (D)	2회 추경 증감액 (E)		
계	20,000	28,340	20,000	0	8,340	2,000	
국 비	18,000	25,507	18,000	0	7,507	1,143	
도 비	1,400	1,984	1,400	0	584	584	
시 비	600	849	600	0	249	273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시설입소 수급자 증가로 인한 변경내시 반영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근거내용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2항과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가정폭력 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 경비(經費)를 보조하는 등 이를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21.11.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중 수급자의 주·부식비, 피복지 및 기타 기초생활 영위를 위한 지원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8,340	
생계급여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수급 생계급여 - 주·부식비, 피복비, 특별위로금, 월동대책비	= 8,340	(경정)28,340 (기정)20,000 (요구) 8,34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 1. ~ 12. :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수요자 발생 시 지원(수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0년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12명)	
2021년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11명)	
2022년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12명)	8.12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20,000	15,573	-	4,427	
2021년	20,000	20,000	-	0	
2022년	20,000	15,000		5,000	8.12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장 임미란	담당자	행정8급 전예란	전화	5584
-----	-------	------------	-----	----------	----	------

#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 (P - 140)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월 ~ 12월 ○ 위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성폭력 상담소 1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성폭력 예방 및 성폭력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지원, 심리적·육체적 트라우마 극복 및 사회복귀에 기여

## ○ 예산요구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예산액 (A)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F=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증감액 (D)	2회 추경 증감액 (E)		
계	9,175	10,863	9,268	0	1,595	1,688	
국 비	6,423	7,566	6,487	0	1,079	1,143	
도 비	1,376	1,648	1,390	0	258	272	
시 비	1,376	1,649	1,391	0	258	273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증가에 따른 증액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근거내용	<p><b>제28조(의료비 지원)</b>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치료 등 의료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용의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p> <p>제14조(의료비용의 지원범위 및 지급절차)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하는 치료비용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p>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21.11.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의료비 지원을 통한 피해자 보호 강화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595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 진료비 및 약제비 - 심리검사비	= 1,595	(경정)10,863 (가정) 9,268 (요구) 1,595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 1. ~ 12. :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수요자 발생 시 지원(수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0년	-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30명)	
2021년	-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30명)	
2022년	-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26명)	8.12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9,386	9,386	-	0	
2021년	8,600	8,600	-	0	
2022년	9,268	7,466		1,802	8.12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장 임미란	담당자	행정8급 전예란	전화	5584
-----	-------	------------	-----	----------	----	------

#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성립전)) (P - 140)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7월 ○ 위치 : 관내(비공개시설)
- 사업규모 : 1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물가상승에 따른 시설수급자의 생계부담 완화
- 예산요구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예산액 (A)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F=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증감액 (D)	2회 추경 증감액 (E)		
계	0	1,800	0	0	1,800	1,800	
국 비	0	1,800	0	0	1,800	1,800	
도 비							
시 비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 및 시설의 소비여력 제고를 통해 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사회보장기본법	제24조제1항
근거내용	제24조(소득 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하에서도 모든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예정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22.11.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중 수급 자격이 있는 입소자의 수에 비례하여 긴급생활지원금(보조금)을 지급하여 피해자 지원의 효과성 제고(1인 200,000원)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800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 긴급생활지원금 : 200,000원 × 9명('22.5.29. 기준) =	1,8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 6. : 성립전 예산 편성
- 2022. 7. : 보조금 시설계좌 지급
- 2022. 12. : 국고보조금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0년	-	
2021년	-	
2022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수급자) 7명	8.12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	-	-	-	
2021년	-	-	-	-	
2022년	1,800	1,400		400	8.12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장 임미란	담당자	행정8급 전예란	전화	5584
-----	-------	------------	-----	----------	----	------

#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설치(성립전)) (P - 141)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7월 ~ 계속                      ○ 위치 : 사우중로 49, 7층(사우동, BYC건물)
- 사업규모 : 1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피해자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및 폭력피해 재발 방지
- 예산요구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예산액 (A)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F=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증감액 (D)	2회 추경 증감액 (E)		
계	0	30,000	0	0	30,000	30,000	
국 비							
도 비	0	30,000	0	0	30,000	30,000	
시 비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22. 3월 경기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 예산 편성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조
근거내용	<p><b>제4조(국가 등의 책무)</b>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1. 가정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p> <p><b>제3조(국가 등의 책무)</b>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1.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운영</p>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type="checkbox"/>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input type="checkbox"/>	자본 <input checked="" type="checkbox"/>	반영예정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input type="checkbox"/>	보조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2022.11.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112 신고된 피해자를 중심으로 김포시·경찰서·복지시설 간 연계하여 원스톱·종합적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확립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0,000	
가정폭력· 성폭력 공동대응팀 설치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 사무용 가구 - 책상, 의자, 캐비닛 등 : 6,492,000원 · 전산장비 - 전자복사기, 프린터 등 : 18,758,000원 · 기타 물품 - 냉장고, 문서세단기 등 : 4,750,000원	= 6,492 = 18,758 = 4,75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 5. : 상담사 채용
- 2022. 6. : 성립전 예산 편성
- 2022. 6. : 사무실 조성 및 필요물품 구입
- 2022. 7. : 김포시-김포경찰서 업무협약식
- 2022. 8. ~ : 개소식 및 업무개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0년	-	
2021년	-	
2022년	김포시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구축 및 개소	8.12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	-	-	-	
2021년	-	-	-	-	
2022년	30,000	26,001		3,999	8.12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장 임미란	담당자	행정8급 전예란	전화	5584
-----	-------	------------	-----	----------	----	------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P - 141)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450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방과후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의 지역아동센터 이용으로 건전한 성장 도모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예산액 (A)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F=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증감액 (D)	2회 추경 증감액 (E)		
계	1,319,040	1,417,490	1,447,080	-5,760	-23,830	98,450	
국 비	659,520	708,745	723,540	-2,880	-11,915	49,225	
도 비	98,928	106,311	108,531	-432	-1,788	7,383	
시 비	560,592	602,434	615,009	-2,448	-10,127	41,842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진입평가 前 신규시설(1개소) 미지출 운영비 감액 및 냉난방비 인상에 따른 센터별 운영비 증액
- ※ 경기도 아동돌봄과-17330(2022.07.22.) 변경 내시 통보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59조 제1호
근거내용	제59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결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본 <input type="checkbox"/>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input type="checkbox"/>	보조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2021.11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아동보호, 교육 기능, 정서적 지원, 문화서비스 등으로 아동돌봄에 대한 종합적 복지서비스 제공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3,830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경정)1,417,490,000원 - (기정)1,441,320,000원 =	-23,830	(경정) 1,417,490 (기정) 1,441,320 (요구) -23,830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0년	- 지역아동센터 19개소(도시 30인 이상 1개소, 읍면 29인 이하 4개소, 도시 29인 이하 4개소, 읍면 19인 이하 6개소, 도시 19인 이하 4개소) 운영비 지원	
2021년	- 지역아동센터 19개소(도시 30인 이상 2개소, 읍면 29인 이하 4개소, 도시 29인 이하 4개소, 읍면 19인 이하 6개소, 도시 19인 이하 3개소) 운영비 지원	
2022년	- 지역아동센터 19개소(도시 30인 이상 2개소, 읍면 29인 이하 4개소, 도시 29인 이하 4개소, 읍면 19인 이하 6개소, 도시 19인 이하 3개소) 운영비 지원	8.12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1,186,440	1,178,640	-	7,800	
2021년	1,319,040	1,302,752		16,288	
2022년	1,441,320	1,022,317		419,003	8.12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여성가족과	아동돌봄팀장 최정은	담당자	행정8급 박해리	전화	5592
-----	-------	------------	-----	----------	----	------

# (요보호아동 그룹홈운영) (P - 141)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월 ~ 12월 ○ 위 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그룹홈 4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과 보호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예산액 (A)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F=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증감액 (D)	2회 추경 증감액 (E)		
계	363,264	453,426	451,814	812	800	90,162	
국 비	145,306	181,370	180,725	325	320	36,064	
도 비	32,694	40,808	40,663	73	72	8,114	
시 비	185,264	231,248	230,426	414	408	45,984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냉난방비 추가 지원(개소당 200천원)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59조 제1호
근거내용	제59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21.11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그룹홈은 보호대상아동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보호, 양육,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 시설로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급하여 아동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킴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800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 운영비 : (경정)453,426천원 - (기정)452,626천원 =	800	(경정) 453,426 (기정) 452,626 (요구) 800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0년	인건비, 운영비 3개소 지원	
2021년	인건비, 운영비 4개소 지원	
2022년	인건비, 운영비 4개소 지원	8.12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259,929	208,868	-	50,424	
2021년	363,264	314,262	-	49,002	
2022년	452,626	311,800		140,826	8.12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여성가족과	아동돌봄팀장 최정은	담당자	복지8급 박보열	전화	5593
-----	-------	------------	-----	----------	----	------

# (아동복지생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P - 142)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월 ~ 12월 ○ 위 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그룹홈 종사자 13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종사자의 사기 진작 및 이용아동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예산액 (A)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F=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증감액 (D)	2회 추경 증감액 (E)		
계	23,950	27,800	24,600	0	3,200	3,850	
국 비							
도 비	4,790	5,560	4,920	0	640	770	
시 비	19,160	22,240	19,680	0	2,560	3,08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종사자 증가로 인한 예산 증가(11명→13명)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1항
근거내용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본 <input type="checkbox"/>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input type="checkbox"/>	보조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2021.11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장기근무 여건을 마련하여 시설 아동에게 안정적인 양육환경에서 양질의 아동복지서비스 제공
- 시설 종사자 근무경력에 따른 차등지원(5년 이상 : 월200천원, 5년 미만 : 월150천원)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200	
아동복지생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경정) 200,000원 × 5명 × 12월 - (기정) 200,000원 × 5명 × 12월 200,000원 × 2명 × 8월                    150,000원 × 7명 × 12월 = 150,000원 × 7명 × 12월	3,200	(경정) 27,800 (기정) 24,600 (요구) 3,2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 1. ~ 12. : 매월 25일 특수근무수당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0년	종사자 10명 지원	
2021년	종사자 11명 지원	
2022년	종사자 13명 지원	8.12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22,800	18,050	-	4,750	
2021년	23,950	22,200	-	1,750	
2022년	24,600	15,100		9,500	8.12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여성가족과	아동돌봄팀장 최정은	담당자	복지8급 박보열	전화	5593
-----	-------	------------	-----	----------	----	------

# (아동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P - 142)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월 ~ 12월 ○ 위 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그룹홈 종사자 13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종사자의 사기 진작 및 이용아동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예산액 (A)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F=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증감액 (D)	2회 추경 증감액 (E)		
계	6,000	8,100	7,200	0	900	2,100	
국 비							
도 비	6,000	8,100	7,200	0	900	2,100	
시 비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종사자 증가로 인한 예산 증가(11명→13명)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1항
근거내용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본 <input type="checkbox"/>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input type="checkbox"/>	보조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2021.11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장기 근무 여건을 마련하여 시설 아동에게 안정적인 양육환경에서 양질의 아동복지서비스 제공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900	
아동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경정) 50,000원 × 12명 × 12월 - (가정) 50,000원 × 12명 × 12월 50,000원 × 2명 × 9월	900	(경정) 8,100 (가정) 7,200 (요구) 9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 1. ~ 12. : 매월 25일 처우개선비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0년	종사자 10명 지원	
2021년	종사자 11명 지원	
2022년	종사자 13명 지원	8.12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6,000	4,950	-	1,050	
2021년	6,900	6,350	-	550	
2022년	7,200	4,400		2,800	8.12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여성가족과	아동돌봄팀장 최정은	담당자	복지8급 박보열	전화	5593
-----	-------	------------	-----	----------	----	------

# (그룹홈 아동 문화학습활동 지원) (P - 142)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월 ~ 12월 ○ 위 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그룹홈 아동 27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예산액 (A)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F=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증감액 (D)	2회 추경 증감액 (E)		
계	65,758	88,048	68,428	0	19,620	22,290	
국 비							
도 비	13,151	17,610	13,686	0	3,924	4,459	
시 비	52,607	70,438	54,742	0	15,696	17,831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시설 생활아동 증가(23명 → 27명)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59조
근거내용	<p><b>제59조(비용 보조)</b>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p>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p>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본 <input type="checkbox"/>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input type="checkbox"/>	보조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2021.11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학습활동비를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9,620	
그룹홈 아동 학습활동 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경정)3,261,040원 × 27명 - (기정)2,975,130원 × 23명 (특기교육비, 자립프로그램비, 학습재료비 등)	19,620	(경정) 88,048 (기정) 68,428 (요구) 19,62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 1. ~ 12. : 분기별 신청에 따라 보조금 지급, 분기별 정산보고
- 2022. 12. : 보조금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0년	그룹홈 아동 18명 지원	
2021년	그룹홈 아동 23명 지원	
2022년	그룹홈 아동 27명 지원	8.12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41,278	26,517	-	14,761	
2021년	65,758	48,345	-	17,413	
2022년	68,428	62,829		5,599	8.12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여성가족과	아동돌봄팀장 최정은	담당자	복지8급 박보열	전화	5593
-----	-------	------------	-----	----------	----	------

# (그룹홈 지원 - 학대피해아동 임시보호비) (P - 142)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월 ~ 12월
- 사업규모 : 관내 그룹홈 6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폭력, 학대 등으로 그룹홈에 긴급 분리 조치되는 요보호아동 지원과 보호를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예산액 (A)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F=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증감액 (D)	2회 추경 증감액 (E)		
계	5,500	2,500	5,500	0	-3,000	-3,000	
국 비							
도 비							
시 비	5,500	2,500	5,500	0	-3,000	-3,00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22년 하반기 학대피해아동 쉼터 개소에 따른 예산 감액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1항
근거내용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21.11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그룹홈에 분리보호조치 아동의 임시보호에 따른 피복비, 식비, 의료비 등 지원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000	
그룹홈 지원 (학대피해아동 임시보호비)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 (경정)30,000원 × 14일 × 6명 - (기정)30,000원 × 14일 × 13명 ≒	-3,000	(경정) 2,500 (기정) 5,500 (요구) -3,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 1. ~ 12. : 분기별 신청에 따라 보조금 지급, 분기별 정산보고
- 2022. 12. : 보조금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0년	학대피해아동 4명 지원	
2021년	학대피해아동 14명 지원	
2022년	학대피해아동 1명 지원	8.12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2,500	630	-	1,870	
2021년	5,500	3,550	-	1,950	
2022년	5,500	2,000		3,500	8.12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여성가족과	아동돌봄팀장 최정은	담당자	복지8급 박보열	전화	5593
-----	-------	------------	-----	----------	----	------

# (그룹홈 종사자 처우개선비 및 명절휴가비) (P - 142)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월 ~ 12월 ○ 위 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그룹홈 종사자 13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그룹홈 종사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여 장기 근무를 독려하고, 이용 아동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예산액 (A)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F=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증감액 (D)	2회 추경 증감액 (E)		
계	17,600	20,400	17,600	0	2,800	2,800	
국 비							
도 비							
시 비	17,600	20,400	17,600	0	2,800	2,80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종사자 증가로 인한 예산 증가(11명→13명)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1항
근거내용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본 <input type="checkbox"/>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재원 <input type="checkbox"/>	2021.11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그룹홈 종사자들에게 처우개선비, 명절휴가비 지원을 통한 열악한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고 이용 아동에게는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



#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지원(국비)) (P - 143)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월 ~ 12월
- 사업규모 : 다함께 돌봄센터 17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예산액 (A)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F=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증감액 (D)	2회 추경 증감액 (E)		
계	22,500	54,600	44,400	0	10,200	32,100	
국 비	11,250	27,300	22,200	0	5,100	16,050	
도 비							
시 비	11,250	27,300	22,200	0	5,100	16,05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전기요금·도시가스 요금 등 냉난방비 인상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30만원→40만원) 예산 증액
- ※ 경기도 아동돌봄과-17183(2022.07.21.) 변경 내시 통보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근거내용	<p><b>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b>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아동의 안전한 보호</li> <li>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li> <li>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li> <li>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li> <li>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li> <li>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li> </ol> <p>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p>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21.11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0,200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국비)	307-05 민간위탁금	·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 (경정)54,600,000원-(기정)44,400,000원 (기 정) 300천원*10개소*12월+300천원*7개소*4월=44,400천원 (추가분) 100천원*17개소*6월=10,200천원	= 10,200	(경정) 54,600 (기정) 44,400 (요구) 10,2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 1. ~ 12. :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기존 10개소)
- 2022. 2. ~ 8. : 신규사업대상지 관리운영협약 체결(신규 7개소)
- 2022. 8. ~ 10. : 리모델링 공사 및 기자재 구입, 종사자 채용
- 2022. 10. ~ 12. : 돌봄센터 개소·운영(신규 7개소)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0년	돌봄센터 3개소 설치 및 운영(총 5개소)	2019년 2개소 설치
2021년	돌봄센터 5개소 설치 및 운영(총 10개소)	
2022년	돌봄센터 10개소 운영 및 신규 설치 공사(5개소)	8.12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11,700	7,431		4,269	
2021년	22,500	14,637		7,863	
2022년	44,400	27,000	-	17,400	8.12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여성가족과	아동돌봄팀장 최정은	담당자	복지6급 이미선	전화	5586
-----	-------	------------	-----	----------	----	------

# (다함께 돌봄센터 치우개선비 지원) (P - 143)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월 ~ 12월
- 사업규모 : 다함께 돌봄센터 10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예산액 (A)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F=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증감액 (D)	2회 추경 증감액 (E)		
계	3,000	11,400	6,000	0	5,400	8,400	
국 비							
도 비	3,000	11,400	6,000	0	5,400	8,400	
시 비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다함께 돌봄센터 전일제 종사자(9명)에 대한 치우개선비 지급에 따른 예산 증액
- ※ 경기도 아동돌봄과-10006(2022.04.18.) 변경 내시 통보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근거내용	<p><b>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b>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아동의 안전한 보호</li> <li>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li> <li>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li> <li>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li> <li>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li> <li>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li> </ol> <p>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p>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21.11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 종사자 치우개선비 지원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5,400	
다함께 돌봄센터 처우개선비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경정) 50,000원×19명×12월- (기정) 50,000원×10명×12월 =	5,400	(경정) 11,400 (기정) 6,000 (요구) 5,4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 1. ~ 12. :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기존 10개소)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0년	종사자 2명 지원	2019년 2개소 설치
2021년	종사자 5명 지원	
2022년	종사자 10명 지원	8.12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1,200	1,200	-	0	
2021년	3,000	3,000	-	0	
2022년	6,000	3,500	-	2,500	8.12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여성가족과	아동돌봄팀장 최정은	담당자	복지6급 이미선	전화	5586
-----	-------	------------	-----	----------	----	------

# (다함께 돌봄센터 특수근무수당 지원) (P - 143)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월 ~ 12월
- 사업규모 : 다함께 돌봄센터 10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예산액 (A)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F=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증감액 (D)	2회 추경 증감액 (E)		
계	19,500	39,000	37,500	0	1,500	19,500	
국 비							
도 비	5,850	11,700	11,250	0	450	5,850	
시 비	13,650	27,300	26,250	0	1,050	13,65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다함께 돌봄센터 종사자 경력 증가에 따른 증액
- ※ 경기도 아동돌봄과-10006(2022.04.18.) 변경 내시 통보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근거내용	<p><b>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b>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아동의 안전한 보호</li> <li>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li> <li>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li> <li>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li> <li>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li> <li>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li> </ol> <p>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p>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21.11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500	
다함께 돌봄센터 특수근무수당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경정)125,000원×26명×12월-(기정)125,000원×25명×12월 =	1,500	(경정) 9,000 (기정) 37,500 (요구) 1,5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 1. ~ 12. :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기존 10개소)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0년	종사자 8명 지원	2019년 2개소 설치
2021년	종사자 20명 지원	
2022년	종사자 31명 지원	8.12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8,700	7,075	-	1,625	
2021년	19,500	17,975	-	1,525	
2022년	37,500	21,350	-	16,150	8.12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여성가족과	아동돌봄팀장 최정은	담당자	복지6급 이미선	전화	5586
-----	-------	------------	-----	----------	----	------

# (아동수당 지급) (P - 143)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월 ~ 12월 ○ 위 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만8세미만 아동 38,600여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균등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보장과 복지향상에 기여

##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예산액 (A)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F=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증감액 (D)	2회 추경 증감액 (E)		
계	42,198,152	45,249,290	45,717,805	0	-468,515	3,051,138	
국 비	33,770,000	36,199,432	36,574,244	0	-374,812	2,429,432	
도 비	3,797,834	4,072,436	4,114,602	0	-42,166	274,602	
시 비	4,630,318	4,977,422	5,028,959	0	-51,537	347,104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예산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한 사업량 감소(39,593명→38,598명)와 이에 따른 감액 편성  
 ※ 경기도 아동돌봄과-16218(2022.07.11.) 변경 내시 통보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아동수당법	제3조
근거내용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수당이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을 조성하여야 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본 <input type="checkbox"/>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input type="checkbox"/>	보조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2021.11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만8세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 가정생활의 안정에 기여하여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아동수당 지원 필요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468,515	
아동수당 지급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경정) 45,249,290,000원 - (기정) 45,717,805,000원 ≒	-468,515	(경정) 45,249,290 (기정) 45,717,805 (요구) -468,515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 1. ~ 12. : 매월 25일 아동수당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0년	만7세미만 아동 35,243명 지급	만7세미만 대상
2021년	만7세미만 아동 33,717명 지급	만7세미만 대상
2022년	만8세미만 아동 37,818명 지급	만8세미만 대상 8.12일 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41,281,200	41,017,600	-	263,600	
2021년	42,198,152	42,114,200	-	83,952	
2022년	45,717,805	23,499,500	-	22,218,305	8.12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여성가족과	아동돌봄팀장 최정은	담당자	행정9급 고희아	전화	5529
-----	-------	------------	-----	----------	----	------

# (결식아동 급식비) (P - 144)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월 ~ 12월 ○ 위 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결식아동 1,300여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맞벌이, 한부모가정 아동 등 결식의 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급식지원을 지원하여 아동의 건전육성을 도모하고 복지의 질 향상

##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예산액 (A)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F=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증감액 (D)	2회 추경 증감액 (E)		
계	1,567,301	1,540,373	1,838,200	0	-297,827	-26,928	
국 비							
도 비	470,211	462,112	551,460	0	-89,348	-8,099	
시 비	1,097,090	1,078,261	1,286,740	0	-208,479	-18,829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사업량 재조정에 따른 감액
- 경기도 아동돌봄과-17327(2022.07.22.) 변경 내시에 따른 편성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35조제2항제3호
근거내용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3.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본 <input type="checkbox"/>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input type="checkbox"/>	보조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2021.11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식사환경과 제공이 열악한 취약계층아동 및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급식 지원 필요
- 아동의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한 급식 지원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97,827	
결식아동 급식비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경정)741,545천원 - (기정)974,246천원	≒ -232,701	(경정)1,540,373 (기정)1,838,200 (요구) -297,827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 (경정)798,828천원 - (기정)863,954천원	≒ -65,126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0년	1,030명 지원	
2021년	1,171명 지원	
2022년	1,146명 지원	8.12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1,189,884	1,087,737	-	102,147	
2021년	1,567,301	1,039,023	-	528,278	
2022년	1,838,200	1,124,489		713,711	8.12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여성가족과	아동돌봄팀장 최정은	담당자	복지8급 박보열	전화	5593
-----	-------	------------	-----	----------	----	------

# (결식아동 급식비(토, 일, 공휴일)) (P - 144)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월 ~ 12월 ○ 위 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결식아동 200여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맞벌이, 한부모가정 아동 등 결식의 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급식지원을 지원하여 아동의 건전육성을 도모하고 복지의 질 향상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예산액 (A)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F=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증감액 (D)	2회 추경 증감액 (E)		
계	331,988	103,242	86,240	0	17,002	-228,746	
국 비							
도 비	331,988	103,242	86,240	0	17,002	-228,746	
시 비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사업량 재조정에 따른 증액
- 경기도 아동돌봄과-17327(2022.07.22.) 변경 내시에 따른 편성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35조제2항제3호
근거내용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3.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21.11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주말 및 공휴일에 식사환경과 제공이 열악한 취약계층아동 및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급식 지원 필요
- 아동의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한 급식 지원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7,002	
결식아동 급식비 (토·일·공휴일)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경정)98,242천원 - (기정)72,240천원	≒ 26,002	(경정) 103,242 (기정) 86,240 (요구) 17,002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 (경정)5,000천원 - (기정)14,000천원	≒ -9,000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0년	691명 지원	
2021년	762명 지원	
2022년	190여명 지원	8.12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200,928	193,902	-	7,026	
2021년	331,988	300,024	-	31,964	
2022년	86,240	57,078		29,162	8.12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여성가족과	아동돌봄팀장 최정은	담당자	복지8급 박보열	전화	5593
-----	-------	------------	-----	----------	----	------

# (김포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P - 144)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7월 ~ 12월
- 사업규모 : 1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피해아동의 안전과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상담, 가족기능 회복 등 재학대 위험 감소를 위한 심층사례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 예산요구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예산액 (A)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F=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증감액 (D)	2회 추경 증감액 (E)		
계	0	311,065	0	220,890	90,175	311,065	
국 비	0	155,533	0	110,445	45,088	155,533	
도 비	0	77,766	0	55,222	22,544	77,766	
시 비	0	77,766	0	55,223	22,543	77,766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2022년 경기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인력조정계획」에 의거 종사자 증원(9명->15명)에 따른 증액 및 사업비 조정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45조
근거내용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는 경우 시·도 지사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type="checkbox"/>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본 <input type="checkbox"/>	반영예정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input type="checkbox"/>	보조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2022.11월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김포시 아동학대 사례 전담기관으로서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을 위한 종합적심층적 사례관리 계획 수립과 관리 업무 수행
- 관내 아동학대의 발견·보호치료 및 예방에 관한 활동 실시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90,175	
김포시 아동보호전문 기관 운영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 (경정)311,065,000원×1개소- (기정)220,890,000원×1개소 =	90,175	(경정)311,065 (기정)220,890 (요구) 90,175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 7. ~ 12. : 인건비 및 운영비 지급, 분기별 정산보고
- 2022. 12. : 보조금 정산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여성가족과	아동보호팀장 이경주	담당자	복지7급 우승모	전화	2600
-----	-------	------------	-----	----------	----	------

#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P - 144)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8월 ~ 12월 ○ 위 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2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학대피해아동을 행위자로부터 분리하여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을 지원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 예산요구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예산액 (A)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F=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증감액 (D)	2회 추경 증감액 (E)		
계	0	17,960	0	26,440	-8,480	17,960	
국 비							
도 비	0	5,388	0	7,932	-2,544	5,388	
시 비	0	12,572	0	18,508	-5,936	12,572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학대피해아동쉼터 개소일 기준에 따른 사업비 감액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59조 제1호
근거내용	제59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type="checkbox"/>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본 <input type="checkbox"/>	반영예정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input type="checkbox"/>	보조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2022.11월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국비지원 외 추가지원으로 시설의 안정적 운영 및 질적 향상 도모와 지원의 확대를 통한 학대피해아동 보호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8,480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아시설 (경정)11,100,000원×1개소-(기정)13,220,000원×1개소 = -6,360</li> <li>· 여아시설 (경정)6,860,000원×1개소-(기정)13,220,000원×1개소 = -2,120</li> </ul>		(경정) 17,960 (기정) 26,440 (요구) -8,48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 7. ~ 12. : 인건비 및 운영비 지급, 분기별 정산보고
- 2022. 12. : 보조금 정산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여성가족과	아동보호팀장 이경주	담당자	복지7급 우승모	전화	2260
-----	-------	------------	-----	----------	----	------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P - 145)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월 ~ 12월 ○ 위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50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복지향상을 통해 성공적 자립에 기여

## ○ 예산요구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예산액 (A)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F=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증감액 (D)	2회 추경 증감액 (E)		
계	129,600	185,000	165,600	0	19,400	55,400	
국 비	103,680	148,000	132,480	0	15,520	44,320	
도 비	3,888	5,550	4,968	0	582	1,662	
시 비	22,032	31,450	28,152	0	3,298	9,418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2022. 8. ~ 12. 월300천원→월350천원 인상 지급(비상경제민생회의, '22.07.08.) 결정에 따른 예산 증액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38조제1항제1호의2
근거내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의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21.11.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아동양육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보호 종료된 만 18세 이상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자립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보호종료 후 5년간 매월 300,000원 지원
- 월 300,000원→월350,000원('22. 8~12월, 5개월 간)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9,400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경정) (300,000원×325명) + (350,000원×50명× 5월) - (기정) 300,000원×46명× 12월 =	19,400	(경정) 185,000 (기정) 165,600 (요구) 19,4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 1. ~ 12. : 매월 20일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 2022. 8. ~ 12. : 월35만원으로 5만원 인상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0년	33명 지원	
2021년	35명 지원	
2022년	48명 지원	8.12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129,600	119,700	-	9,900	
2021년	129,600	124,200	-	5,400	
2022년	165,600	97,500		68,100	8.12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여성가족과	아동보호팀장 이경주	담당자	시간선택제암기제미급이한나	전화	2830
-----	-------	------------	-----	---------------	----	------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P - 145)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월 ~ 12월 ○ 위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150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입양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예산액 (A)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F=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증감액 (D)	2회 추경 증감액 (E)		
계	306,000	360,000	306,000	102,000	-48,000	54,000	
국 비	214,200	252,000	214,200	71,400	-33,600	37,800	
도 비	13,770	16,200	13,770	4,590	-2,160	2,430	
시 비	78,030	91,800	78,030	26,010	-12,240	13,77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대상자 감소로 감액(170명→150명)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입양특례법	제35조제1항
근거내용	제35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양육수당, 의료비, 아동교육지원비,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21.11.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만18세미만 입양아동 대상으로 양육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입양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 및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48,000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경정)200,000원×150명×12월- (기정)200,000원× 170명× 12월 =	-48,000	(경정)360,000 (기정)408,000 (요구)-48,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 1. ~ 12. : 매월 20일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0년	155명 지원	
2021년	150명 지원	
2022년	144명 지원	8.12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277,649	277,350	-	299	
2021년	306,000	287,550	-	18,450	
2022년	408,000	175,800		232,200	8.12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여성가족과	아동보호팀장 이경주	담당자	시간선택제임차비금이한나	전화	2830
-----	-------	------------	-----	--------------	----	------

# (입양비용 지원) (P - 145)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월 ~ 12월
- 사업규모 : 4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입양 알선 비용을 지원하여 입양가정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입양 활성화 기여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예산액 (A)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F=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증감액 (D)	2회 추경 증감액 (E)		
계	16,200	10,800	16,200	-8,100	2,700	-5,400	
국 비	11,340	7,550	11,340	-5,670	1,880	-3,790	
도 비	729	485	729	-365	121	-244	
시 비	4,131	2,765	4,131	-2,065	699	-1,366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입양비용 지원 증액에 따른 확정내시 반영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입양특례법	제32조제2항
근거내용	제32조(비용의 수납 및 보조)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친이 될 사람에게 제1항의 입양 알선에 실제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신규사업□	계속사업■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경상■	자본□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21.11월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국내 입양한 경우, 입양기관에 입양알선비용을 정액 지원
  - 보건복지부허가기관 2,700천원/시도허가기관 1,000천원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계		2,700	
입양비용 지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 입양비용 (경정)2,700,000원×4명-(기정)2,700,000원×3명 =	2,700	(경정) 10,800 (기정) 8,100 (요구) 2,7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 1. ~ 12. : 국내 입양 발생 시 수시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0년	입양아동 6명 지원	
2021년	입양아동 3명 지원	
2022년	입양아동 2명 지원	8.12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16,200	16,200	-	-	
2021년	16,200	6,400	-	9,800	
2022년	8,100	5,400		2,700	8.12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여성가족과	아동보호팀장 이경주	담당자	시간선택제임기제미금 이한나	전화	2830
-----	-------	------------	-----	----------------	----	------

#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 (P - 146)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월 ~ 12월 ○ 위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10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입양대상아동이 입양 결정 전까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보호비 지원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예산액 (A)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F=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증감액 (D)	2회 추경 증감액 (E)		
계	0	60,000	24,000	0	36,000	60,000	
국 비	0	42,000	16,800	0	25,200	42,000	
도 비	0	2,700	1,080	0	1,620	2,700	
시 비	0	15,300	6,120	0	9,180	15,30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관내 위탁가정에 대기 중인 입양대상아동의 증가로 증액(4명→10명)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입양특례법	제35조제2항
근거내용	제35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양육수당, 의료비, 아동교육지원비,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21.11.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입양 대상아동이 위탁가정에서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보호비 지급 및 입양의 공공성 강화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6,000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경정)1,000,000원×10명×6월- (기정)1,000,000원×4명×6월 =	36,000	(경정)60,000 (기정)24,000 (요구)36,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 1. ~ 7. : 지원 규모 및 지급 방법 등 세부 지침 마련
- 2022. 7. ~ 12. :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0년	-	
2021년	-	
2022년	입양아동 9명 지원	8.12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	-	-	-	
2021년	-	-	-	-	
2022년	24,000	10,000		14,000	8.12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여성가족과	아동보호팀장 이경주	담당자	시간선택제임가제급이한나	전화	2830
-----	-------	------------	-----	--------------	----	------

# (입양축하금 지원(국비)) (P - 146)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위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4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국내입양 활성화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예산액 (A)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F=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증감액 (D)	2회 추경 증감액 (E)		
계	0	8,000	0	10,000	-2,000	8,000	
국 비	0	5,600	0	7,000	-1,400	5,600	
도 비	0	360	0	450	-90	360	
시 비	0	2,040	0	2,550	-510	2,04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입양축하금 지원 사업비 감액에 따른 확정내시 반영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입양특례법	제35조제1항
근거내용	제35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양육수당, 의료비, 아동교육지원비,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본 <input type="checkbox"/>	반영예정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input type="checkbox"/>	보조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2022.11.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입양축하금 지원을 통해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하고 국내 입양 활성화에 기여
- 입양확정일이 2022. 1. 1. 이후인 입양가정에 2,000천원/인/회 지급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000	
입양축하금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경정)2,000,000원×4명- (기정)2,000,000원× 5명 =	-2,000	(경정) 8,000 (기정) 10,000 (요구)-2,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 1. ~ 12. : 매달 20일, 입양 확정 후 1회에 한하여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0년	-	
2021년	-	
2022년	2명 지원	8.12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	-	-	-	
2021년	-	-	-	-	
2022년	10,000	4,000		6,000	8.12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여성가족과	아동보호팀장 이경주	담당자	시간선택제임가제미금이하나	전화	2830
-----	-------	------------	-----	---------------	----	------

# (전문아동보호비(국비)) (P - 146)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위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2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국내입양 활성화
- 예산요구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예산액 (A)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F=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증감액 (D)	2회 추경 증감액 (E)		
계	0	24,000	0	12,000	12,000	24,000	
국 비	0	16,800	0	8,400	8,400	16,800	
도 비	0	1,080	0	540	540	1,080	
시 비	0	6,120	0	3,060	3,060	6,12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관내 위기아동 보호가정 증가(1명→2명)로 예산 증액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입양특례법	제14조제1항제1호
근거내용	<b>제14조(가정위탁보호의 신청 등) ①</b> 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가정위탁보호: 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등으로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본 <input type="checkbox"/>	반영예정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input type="checkbox"/>	보조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2022.11.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학대피해아동, 36개월 미만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을 양육하는 전문위탁가정에 전문아동보호비(1,000천원/인/월) 지급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2,000	
전문아동보호비 (국비)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경정)1,000,000원×2명×12월-(기정)1,000,000원×1명×12월 =	12,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 1. ~ 12. : 매월 20일 전문위탁가정에 전문아동보호비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0년	-	
2021년	-	
2022년	1명 지원	8.12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	-	-	-	
2021년	-	-	-	-	
2022년	12,000	6,000		6,000	8.12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여성가족과	아동보호팀장 이경주	담당자	시간선택제임가제미급이한나	전화	2830
-----	-------	------------	-----	---------------	----	------

# (아이돌봄지원) (P - 147)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월 ~ 12월 ○ 위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관내 500여 가구에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아동의 복지증진,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예산액 (A)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F=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증감액 (D)	2회 추경 증감액 (E)		
계	2,702,651	2,805,270	2,526,573	0	278,697	102,619	
국 비	1,893,811	1,963,690	1,768,601	0	195,089	69,879	
도 비	404,420	420,790	378,986	0	41,804	16,370	
시 비	404,420	420,790	378,986	0	41,804	16,37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2022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제4조
근거내용	제4조(국가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21.11월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지원
- 아이돌보미 채용을 통하여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의 고용 증진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78,697	
아이돌봄지원	307-05 민간위탁금	· 아이돌봄비 사회보험료(기관부담금) : (경정) 19,200,000×12월 - (기정) 18,000,000×12월 · 코로나19 특례 환불금 : (경정) 코로나19 특례(일반/의료방역) 환불금 15,513,000	= 29,913	(경정) 47,913 (기정) 18,000 (요구) 29,913
	308-11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 아이돌봄비 활동수당 - 시간제: (경정) 7,897원×165명×840시간 - (기정) 8,064원×140명×840시간 - 종알제: (경정) 7,059원×21명×2,400시간 - (기정) 7,536원×14명×2,400시간	≐ 248,784	(경정) 1,450,297 (기정) 1,201,513 (요구) 248,784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 1. ~ 12. : 아이돌봄지원 사업 운영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0년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533가구 수요)	
2021년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534가구 수요)	
2022년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486가구 수요)	8.12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2,410,354	2,325,727	-	84,627	
2021년	2,702,651	2,702,651	-	0	
2022년	2,526,573	1,576,969		949,604	8.12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여성가족과	가족다문화팀장 한규리	담당자	복지9급 김상민	전화	5608
-----	-------	-------------	-----	----------	----	------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P - 147)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7월 ~ 12월 ○ 위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청소년부모 12가주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

○ 예산요구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예산액 (A)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F=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증감액 (D)	2회 추경 증감액 (E)		
계	0	14,400	0	0	14,400	14,400	
국 비	0	7,200	0	0	7,200	7,200	
도 비	0	1,080	0	0	1,080	1,080	
시 비	0	6,120	0	0	6,120	6,12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신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운영에 따른 편성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
근거내용	<b>제18조의 3(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b>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에게 복지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복지 지원은 생활 지원, 의료 지원, 주거 지원, 청소년 활동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 ③ 복지 지원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예정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22.11월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서는 아동양육비 등의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이와 유사한 환경의 청소년 부모는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지원 필요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4,400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아동양육비 : 200,000원 × 12가구 × 6월 =	14,4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 7. ~ 12.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여성가족과	가족다문화팀장 한규리	담당자	복지8급 김정진	전화	5605
-----	-------	-------------	-----	----------	----	------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

**보육과**



#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P - 151)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월 ~ 12월 ○ 위치 : 관내
- 사업규모 : 515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국공립 및 비영리법인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을 통하여 어린이집의 서비스를 개선하고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 도모

## ○ 예산요구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예산액 (A)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F=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증감액 (D)	2회 추경 증감액 (E)		
<b>계</b>	<b>8,496,250</b>	<b>11,698,453</b>	<b>10,501,164</b>	<b>92,528</b>	<b>1,104,761</b>	<b>3,202,203</b>	
국 비	4,248,124	7,019,072	6,300,698	55,517	662,857	2,770,948	
도 비	2,124,063	3,275,567	2,940,326	25,908	309,333	1,151,504	
시 비	2,124,063	1,403,814	1,260,140	11,103	132,571	-720,249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국도비 내시서 변경(사업량 및 인건비 증액)에 따른 예산 증액(507명 → 515명)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	제36조
근거내용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등에 인건비 지원 필요
- 지원기준

구분	원장	담임교사		취사부 (평가인증 또는 농어촌 등 취약지역 1명)	비고
		영아반 (만0~2세)	유아반 (만3~5세)		
지원액	보수월액 80%	보수월액 80%	보수월액 30%	보수월액 100%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합 계	= 1,104,761	
		·원장 : 약 300,000원× 61명×12월	= 219,600	
		·영아반 교사 : 약 250,000원×208명×12월	= 624,000	
		·영아반 교사 : 약 50,000원×146명×12월	= 87,600	
		·조리사 : 약 150,000원×100명×12월	= 173,561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 ~ 2022.12. :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0년	구 분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합계	월평균	
	지원인원	379	68	447		
2021년	구 분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합계		
	지원인원	429	66	495		
2022년	구 분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합계		8.12일 기준
	지원인원	463	66	529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8,496,250	8,432,294	-	63,956	
2021년	10,593,692	10,501,983	-	91,709	
2022년	10,593,692	6,991,060		3,602,632	8.12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육과	보육지원팀장 탁여진	담당자	사회복지8급 유은채	전화	5329
-----	-----	------------	-----	------------	----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영유아보육료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 교사인건비 부족분 : 13,844,000원*1월	= 13,844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 ~ 2022.12. :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0년	구 분	합계	영아전담 어린이집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야간연장 어린이집	월평균
	지원인원	132	48	18	13	56	
2021년	구 분	합계	영아전담 어린이집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야간연장 어린이집	월평균
	지원인원	127	48	18	16	51	
2022년	구 분	합계	영아전담 어린이집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야간연장 어린이집	8.12일 기준
	지원인원	128	48	17	16	47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3,232,822	3,112,247	-	120,575	
2021년	3,380,432	3,289,297	-	91,135	
2022년	3,439,207	1,943,381		1,495,826	8.12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육과	보육지원팀장	탁여진	담당자	행정8급 서상원	전화	5328
-----	-----	--------	-----	-----	----------	----	------



# (대체인력 인건비) (P - 151)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월 ~ 12월
- 사업규모 : 445일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어린이집 보육교사 부재시 발생할 수 있는 보육공백을 최소화하여 보육의 항상성 유지
- 예산요구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예산액 (A)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F=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증감액 (D)	2회 추경 증감액 (E)		
계	39,935	43,460	33,460		10,000	3,525	
국 비							
도 비	7,987	8,692	6,692		2,000	705	
시 비	31,948	34,768	26,768		8,000	2,82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대체인력 지원 일수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330일 → 445일)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경기도 보육조례	제19조제1항제13호
근거내용	제19조(비용의 보조)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3. 그 밖에 도지사가 영유아 및 아동 보육의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수교육, 경조사, 연가, 병가 등의 사용에 따른 보육 공백 최소화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대체인력 인건비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 운영비보조	합 계	=	10,000
		·보육교사 : 87,140원×110일	≐	9,630
		·조리원 : 74,000원× 5일	=	37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 ~ 2022.12. :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0년	구분	지원일수	지원금액	※보육교사 일 82,000원/인 조리원 일 69,000원/인
	합계	403		
	연 가	375		
	직무승급교육	-		
	병 가	17		
	본인결혼	-		
기 타	11			
2021년	구분	지원일수	지원금액	※보육교사 일 83,140원/인 조리원 일 70,000원/인
	합계	239		
	연 가	199		
	직무승급교육	-		
	병 가	32		
	본인결혼	-		
기 타	8			
2022년	구분	지원일수	지원금액	※보육교사 일 87,140원/인 조리원 일 74,000원/인
	합계	283		
	연 가	104		
	직무승급교육	-		
	병 가	103		
	본인결혼	-		
기 타	76			

8.12일 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39,700	10,967	-	28,733	
2021년	39,935	19,221	-	20,714	
2022년	33,460	26,414		7,046	8.12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육과	보육지원팀장 탁여진	담당자	사회복지7급 박현정	전화	5327
-----	-----	------------	-----	------------	----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대체교사 인건비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 운영비보조	·선임교사 인건비 : 월 평균 1,671,990원×27명×4월	= 180,575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 8. : 선임교사 선정 공고 및 선정
- 2022. 9. ~ 12. : 선임교사 채용 및 운영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0년	-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30명 인건비 월 2,243천원/인, 운영비 지원 -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2021년	-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33명 인건비 월 2,271천원/인, 운영비 지원 -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2022년	-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36명 인건비 월 2,303천원/인, 운영비 지원 -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8.12일 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982,808	809,597	-	173,211	
2021년	983,840	983,719	-	121	
2022년	1,271,256	797,748		473,508	8.12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육과	보육지원팀장	탁여진	담당자	사회복지7급 박현정	전화	5327
-----	-----	--------	-----	-----	------------	----	------

# (0세아전용 어린이집 운영지원) (P - 152)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월 ~ 12월
- 사업규모 : 10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맞벌이 및 취업여성의 0세아 보육 문제 해소로 사회·경제활동 활성화 기여
- 예산요구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예산액 (A)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F=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증감액 (D)	2회 추경 증감액 (E)		
계	982,968	1,024,596	930,996		93,600	41,628	
국 비							
도 비	196,594	204,919	186,199		18,720	8,325	
시 비	786,374	819,677	744,797		74,880	33,303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0세아전용 어린이집 추가 지정에 따른 예산 증액(1개소)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경기도 보육조례	제19조제1항제13호
근거내용	제19조(비용의 보조)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3. 그 밖에 도지사가 영유아 및 아동 보육의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취업부모의 영아자녀 보육에 대한 부담경감
- 0세아 보육의 특수성 및 부모의 다양한 보육 요구에 부응하여 출산율 제고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	93,600
0세아전용 어린이집 운영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 운영비보조	· 인건비 : 2,000,000원×3명×10월	=	60,380
		· 운영비 : 600,000원×3반×10월	=	18,000
		· 조리원 : 600,000원×1명×10월	=	6,000
		· 야간연장 : 461,000원×2명×10월	=	9,22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 ~ 2022.12. : 0세아전용 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0년	구 분	지원금액	9개소
	추가반 인건비	1,800천원(월/반)	
	추가반 운영비	600천원(월/반)	
	조리원 인건비	600천원(월/개소)	
	야간연장 추가반 근무수당	445천원(월/반)	
2021년	구 분	지원금액	9개소
	추가반 인건비	1,900천원(월/반)	
	추가반 운영비	600천원(월/반)	
	조리원 인건비	600천원(월/개소)	
	야간연장 추가반 근무수당	457천원(월/반)	
2022년	구 분	지원금액	10개소
	추가반 인건비	2,000천원(월/반)	
	추가반 운영비	600천원(월/반)	
	조리원 인건비	600천원(월/개소)	
	야간연장 추가반 근무수당	461천원(월/반)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941,380	804,290	-	137,050	
2021년	982,968	880,212	-	102,756	
2022년	930,996	552,636	/	378,360	8.12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육과	보육지원팀장	탁여진	담당자	사회복지7급 박현정	전화	5327
-----	-----	--------	-----	-----	------------	----	------

#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 (P - 152)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월~12월 ○ 위치 : 관내
- 사업규모 : 7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 지원으로 양질의 보육환경 제공
- 예산요구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예산액 (A)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F=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증감액 (D)	2회 추경 증감액 (E)		
계	17,899	20,760	17,899		2,861	2,861	
국 비	10,739	12,456	10,739		1,717	1,717	
도 비	5,012	5,813	5,012		801	801	
시 비	2,148	2,491	2,148		343	343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국도비 내시서 변경(운영비 증액)에 따른 예산 증액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	제36조
근거내용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본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input type="checkbox"/>	보조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사회기반시설이 취약하고 보육아동이 상대적으로 적은 농어촌소재 법인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으로 보다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운영비 : 408,700원×7개소 =	2,861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 ~ 2022.12. :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0년	- 지원실적 :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7개소 운영비 지원	7개소/월
2021년	- 지원실적 :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7개소 운영비 지원	7개소/월
2022년	- 지원실적 :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7개소 운영비 지원	8.12일 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18,438	18,438	-	0	
2021년	17,351	17,351	-	0	
2022년	17,899	10,380		7,519	8.12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육과	보육지원팀장 탁여진	담당자	사회복지8급 유은채	전화	5329
-----	-----	------------	-----	------------	----	------



# (누리과정 운영 지원) (P - 152)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월 ~ 12월
- 사업규모 : 5,130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만3~5세 아동을 대상으로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여 공통의 보육환경 조성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예산액 (A)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F=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증감액 (D)	2회 추경 증감액 (E)		
계	21,408,648	22,502,052	21,219,588		1,282,464	1,093,404	
국 비							
도 비	21,408,648	22,502,052	21,219,588		1,282,464	1,093,404	
시 비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22년 누리과정 보육료 인상분 반영에 따른 예산 증액(26천원 → 28천원)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23조
근거내용	<p><b>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2조(무상보육의 내용 및 범위 등) :</b>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영유아(영유아인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중 영유아를 포함한다) 무상보육은 다음 각 호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한다.</p> <p>1.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이상인 영유아: 어린이집에서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 중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보육·교육과정(이하 "공통과정"이라 한다)을 제공받는 경우. 다만, 1월 2일부터 3월 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만 3세가 된 영유아로서 어린이집에서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p> <p><b>제23조(무상보육 실시 비용) :</b>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제22조제1항제1호의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 다만, 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까지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p>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연·출자회의의결
경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본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input type="checkbox"/>	보조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 보육료 및 누리과정 운영비를 지원하여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누리과정 운영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합 계	= 1,282,464
		·보육료 인상분	: 20,000원×5,130명×12개월 = 1,231,200
		·운영비	: 2,136,000원×2개소×12개월 = 51,264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 ~ 2022.12. : 누리과정 운영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0년	구분	지원금액	지원인원(월)	월 평균	
	총 계		5,745		
	누리과정 보육료	월 240천원/인	5,365		
	누리과정 운영비 (연구개발비)	만3~5세당 7만원 중 교사처우 지급 후 남은 금액 (매월 아동 현원기준 균분)			
누리과정 처우개선비	월 360천원/인	380			
2021년	구분	지원금액	지원인원(월)		
	총 계		6,064		
	누리과정 보육료	월 260천원/인	5,654		
	누리과정 운영비 (연구개발비)	만3~5세당 7만원 중 교사처우 지급 후 남은 금액 (매월 아동 현원기준 균분)			
누리과정 처우개선비	월 360천원/인	410			
2022년	구분	지원금액	지원인원(월)		8.12일 기준
	총 계		5,752		
	누리과정 보육료	월 280천원/인	5,353		
	누리과정 운영비 (연구개발비)	만3~5세당 7만원 중 교사처우 지급 후 남은 금액 (매월 아동 현원기준 균분)			
누리과정 처우개선비	월 360천원/인	399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21,598,999	21,598,999	-	0	
2021년	21,408,648	21,408,648	-	0	
2022년	21,219,588	14,954,572		6,265,016	8.12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육과	보육지원팀장 탁여진	담당자	행정8급 서상원 사회복지8급 유은채	전화	5328 5329
-----	-----	------------	-----	------------------------	----	--------------

#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P - 153)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월~12월 ○ 위치 : 관내
- 사업규모 : 300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이수율을 높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 예산요구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예산액 (A)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F=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증감액 (D)	2회 추경 증감액 (E)		
계	35,000	30,000	27,000		3,000	-5,000	
국 비	21,000	18,000	16,200		1,800	-3,000	
도 비	9,800	8,400	7,560		840	-1,400	
시 비	4,200	3,600	3,240		360	-60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지원대상 교사 수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270명 → 300명)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	제36조
근거내용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본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input type="checkbox"/>	보조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승급 및 직무교육) 비용을 지원하여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
- 지원내용 : 직무교육비 80,000원/인, 승급교육비 140,000원/인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평균 교육비 : 100,000원×30명×1회	= 3,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 ~ 2022.12. : 보수교육비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0년	구 분	지원금액	지원인원	
	총 계		162	
	직무교육비	80천원/인	32	
	승급교육비	140천원/인	130	
2021년	구 분	지원금액	지원인원	
	총 계		240	
	직무교육비	80천원/인	87	
	승급교육비	140천원/인	153	
2022년	구 분	지원금액	지원인원	8.12일 기준
	총 계		-	
	직무교육비	80천원/인	-	
	승급교육비	140천원/인	-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36,300	21,204	-	15,096	
2021년	35,000	27,360	-	7,640	
2022년	27,000	0		27,000	8.12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육과	보육지원팀장 탁여진	담당자	사회복지8급 유은채	전화	5329
-----	-----	------------	-----	------------	----	------

# (어린이집 경영안정화 지원금 지원(성립전)) (P - 153)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3월 ~ 4월
- 사업규모 : 10,397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민간가정 어린이집 경영안정화 지원으로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
- 예산요구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예산액 (A)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F=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증감액 (D)	2회 추경 증감액 (E)		
계		311,910			311,910	311,910	
국 비							
도 비		311,910			311,910	311,910	
시 비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린이집 재원 아동 감소 등 시설운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경영안정화 지원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경기도 보육조례	제19조제1항제13호
근거내용	제19조(비용의 보조)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3. 그 밖에 도지사가 영유아 및 아동 보육의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type="checkbox"/>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본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input type="checkbox"/>	보조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재원아동 감소 등의 어린이집 시설운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함
- 정부미지원(민간·가정)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아동 1인당 30천원 운영비 지원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어린이집 경영안정화 지원금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 운영비보조	·운영비 30,000원×10,397명×1회	= 311,910	1회 한시 지원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3. ~ 2022.04. : 어린이집 경영안정화 지원금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2년	사업명	지원금액	지원개소/아동수	비고	8.12일 기준
	어린이집 경영안정화 지원금 지원	30천원/명	350개소/10,397명	2022.2.3. 현원 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2년	311,910	311,910		0	8.12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육과	보육지원팀장	탁여진	담당자	사회복지7급 박현정	전화	5327
-----	-----	--------	-----	-----	------------	----	------

# (가정양육수당 지원) (P - 153)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월 ~ 12월 ○ 위치 : 관내
- 사업규모 : 6,560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함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예산액 (A)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F=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증감액 (D)	2회 추경 증감액 (E)		
계	15,142,662	10,688,014	9,539,878		1,148,136	-4,454,648	
국 비	11,356,997	8,016,010	7,154,908		861,102	-3,340,987	
도 비	2,649,965	1,870,403	1,669,479		200,924	-779,562	
시 비	1,135,700	801,601	715,491		86,110	-334,099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수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5,697명 → 6,560명)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근거내용	제34조2(양육수당)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과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원을 통해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 사업내용

연령(개월)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0 ~ 11	200천원	200천원	200천원
12 ~ 23	150천원	177천원	
24 ~ 35	100천원	156천원	100천원
36 ~ 47		129천원	

연령(개월)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48 ~ 83		100천원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가정양육수당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합계 = 1,148,136	
		가정양육수당 : 100,000원×728명×12개월 = 871,200	
		150,000원× 71명×12개월 = 123,336	
		200,000원× 64명×12개월 = 153,6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 ~ 2022.12. : 가정양육수당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연령(개월)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양육수당	총계	
2020년	지원인원	8,100명	6명	25명	8,131명	월평균
	연령(개월)					
2021년	지원인원	8,100명	4명	14명	8,118명	
	연령(개월)					
2022년	지원인원	6,480명	3명	14명	6,497명	8.12일 기준
	연령(개월)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15,941,490	15,784,707	-	156,783	
2021년	15,142,662	13,190,909	-	1,951,753	
2022년	9,539,878	6,541,102	-	2,998,776	8.12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육과	보육지원팀장	탁여진	담당자	사회복지8급 유은채	전화	5329
-----	-----	--------	-----	-----	------------	----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영유아보육료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합 계	= 7,126,598	
		·만0세 : 1,069,000원×730명×6월	= 4,682,220	
		·만1세 : 749,000원×356명×6월	= 1,599,864	
		·만2세 : 574,000원×245명×6월	= 844,514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 ~ 2022.12. : 영유아보육료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0년	구분	영유아 보육료				기관보육료				월평균
		만0세	만1세	만2세	지원인원	0세	1세	2세	지원인원	
	지원액	470천원	414천원	343천원	9,262명/월	500천원	272천원	184천원	7,129명/월	
2021년	구분	영유아 보육료				기관보육료				8.12일 기준
		만0세	만1세	만2세	지원인원	0세	1세	2세	지원인원	
	지원액	484천원	426천원	353천원	8,635명/월	528천원	287천원	194천원	6,971명/월	
2022년	구분	영유아 보육료				기관보육료				8.12일 기준
		만0세	만1세	만2세	지원인원	0세	1세	2세	지원인원	
	지원액	499천원	439천원	364천원	8,460명/월	570천원	310천원	210천원	6,785명/월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62,416,450	62,415,972	-	478	
2021년	68,507,973	68,507,875	-	98	
2022년	58,098,589	42,803,683		15,294,906	8.12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육과	보육지원팀장 탁여진	담당자	행정8급 서상원	전화	5328
-----	-----	------------	-----	----------	----	------

# (영아수당 지원) (P - 154)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월 ~ 12월 ○ 위치 : 관내
- 사업규모 : 1,697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 예산요구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예산액 (A)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F=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증감액 (D)	2회 추경 증감액 (E)		
<b>계</b>		<b>5,372,753</b>	<b>5,749,130</b>		<b>-376,377</b>	<b>5,372,753</b>	
국 비		4,029,558	4,311,840		-282,282	4,029,558	
도 비		940,234	1,006,100		-65,866	940,234	
시 비		402,961	431,190		-28,229	402,961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영아수당 사업량 감소에 따른 예산 감액(2,916명 → 1,697명)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
근거내용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22년 이후 출생 만 0~1세 아동에게 매월 영아수당을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선택권 보장 강화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영아수당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영아수당 : 300,000원×1,219명×1월	≒ -376,377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2022.12. : 영아수당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2년	구분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12일 기준
	지원인원	4,618명	55명	343명	595명	934명	1,231명	1,460명	1,715명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2년	5,749,130	2,372,700		3,376,430	8.12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육과	보육지원팀장 탁여진	담당자	사회복지8급 유은채	전화	5329
-----	-----	------------	-----	------------	----	------

#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P - 154)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9월 ~ 12월 ○ 위치 : 관내
- 사업규모 : 165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내·외국인 아동의 차별 없는 보육환경 조성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예산액 (A)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F=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증감액 (D)	2회 추경 증감액 (E)		
<b>계</b>		<b>170,280</b>			<b>170,280</b>	<b>170,280</b>	
국 비							
도 비							
시 비		170,280			170,280	170,28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아동(만0~5세)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위한 신규 예산 편성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김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6조 제①항 제7호
근거내용	김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6조(지원의 범위) :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교육사업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외국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 보육 연령, 이용 시설에 따른 외국인 아동 간의 역차별 문제 해소 필요
- ※ 2022년 3월부터 유치원 이용 외국인 아동(만3~5세) 유아학비 지원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보육료 : 258,000원×165명×4개월	= 170,28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9. ~ 2022.12. :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육과	보육지원팀장 탁여진	담당자	행정8급 서상원	전화	5328
-----	-----	------------	-----	----------	----	------